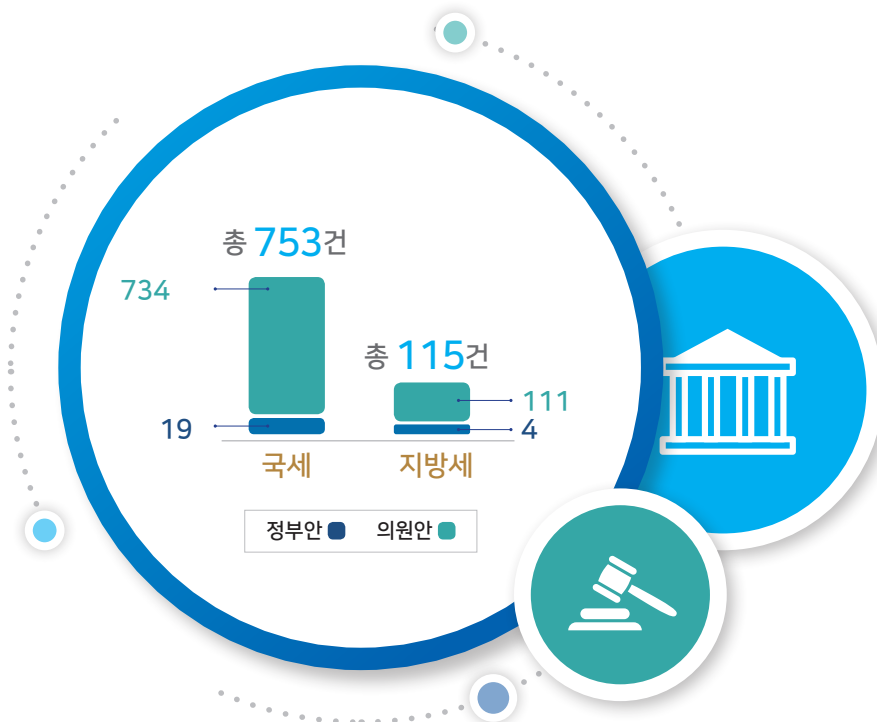


#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총괄** |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최미희 조세분석심의관  
이영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심혜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작성** | 김효경, 박정환, 심성택, 김재혁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백경엽, 태정림, 박지원, 신우리 소득법인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온세현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지원·편집** | 이연지 재산소비세분석과 행정실무원  
조혜정 소득법인세분석과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 02) 788-4834 | wealthc@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19. 12.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19. 12. 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개정세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세법심사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심사부터 2019년 12월 10일, 23일, 27일 3번의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체계 조정 및 과세형평 강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연장,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주세 과세체계의 종량세 전환 등이 개정세법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올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과정상의 쟁점을 충실히 담아 2020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별도로 추계하여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심사결과별로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안·수정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세법심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 차 례

## 요 약 / ix

|                                     |     |
|-------------------------------------|-----|
| I. 개 관 .....                        | 1   |
| 1. 심사대상 .....                       | 1   |
| 2. 국회 의결 과정 .....                   | 2   |
| 3.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 7   |
| 4. 최근 개정세법과의 비교 .....               | 8   |
| 5. 조세지출 개정 항목 .....                 | 9   |
| II. 2020년도 확정 국세수입 예산 .....         | 13  |
| 1. 2020년도 국세수입 예산 .....             | 13  |
| 2. 2020년도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 16  |
| III.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및 논의 사항 .....     | 23  |
| 1. 국세기본법 .....                      | 23  |
| 2. 소득세 .....                        | 29  |
| 3. 법인세 .....                        | 48  |
| 4. 소비세제 .....                       | 64  |
| 5. 재산세제 .....                       | 79  |
| 6. 기타세제 .....                       | 86  |
| 7. 지방세제 .....                       | 94  |
| IV. 유형별 심사 반영사항 .....               | 101 |
| 1. 의원발의 개정안 중 통과법안 .....            | 101 |
| 2. 정부제출 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         | 110 |
| 3. 부대의견 채택 법률 .....                 | 116 |

|                        |     |
|------------------------|-----|
| 4. 쟁점이 되었던 계류 법안 ..... | 121 |
|------------------------|-----|

|           |     |
|-----------|-----|
| 부 록 ..... | 14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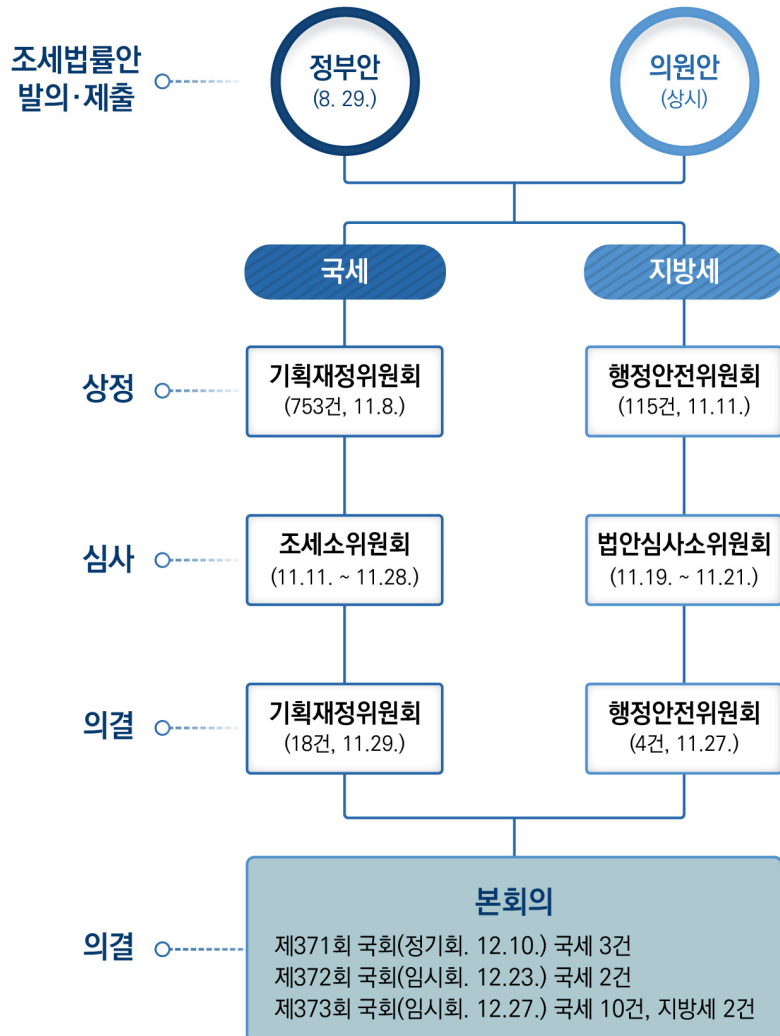
|                     |     |
|---------------------|-----|
| 1. 기타 세법개정 항목 ..... | 145 |
|---------------------|-----|

|                       |     |
|-----------------------|-----|
| 2. 세입부수법안 지정 목록 ..... | 155 |
|-----------------------|-----|

## 요 약

국회는 2019년 12월 10일, 23일, 27일 개정세법에 대한 의결을 완료  
: 국세 15개 법률, 지방세 2개 법률

### 세법개정안 심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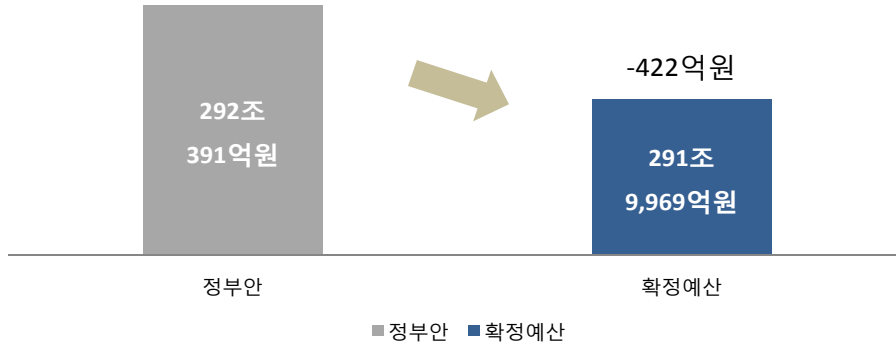
## 개정세법 주요 사항

- 과세체계의 조정과 조세감면 확대에 중점, 과세형평 강화 조치도 병행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시 편익을 확대하는 장치 보완

| 분야      | 개정 방향                        | 주요 개정 항목                                                                                                                                                                                                                     |
|---------|------------------------------|------------------------------------------------------------------------------------------------------------------------------------------------------------------------------------------------------------------------------|
| 과세체계 조정 | 일부 항목의 세율·과세체계·과세대상 등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li> <li>•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li> <li>•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 시 경유와 동일한 세율 부과</li> <li>•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종업원 등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추가</li> </ul>                           |
| 조세감면 확대 |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득·소비 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연장 및 가속상각특례 연장</li> <li>•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연장</li> <li>• 사적연금 공제대상 납입금액 확대</li> <li>•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연장</li> <li>•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연장</li> </ul> |
| 과세형평 강화 | 세부담 형평 측면의 공제 규모 축소·과세회피 최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li> <li>•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축소연장</li> <li>• 외부감사대상 확대 등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li> <li>• 국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감치명령</li> </ul>                                                     |
| 납세권익 보호 | 납세자의 권익보호 장치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조정, 민간위원의 자격 강화</li> <li>•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li> <li>•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li> <li>• 세무조사의 정의 명확화 및 조사와 무관한 제출자료 요구 제한</li> </ul>                 |
| 납세편익 증진 | 과세 상 불이익 최소화 장치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허용</li> <li>•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인하</li> </ul>                                                                                             |

## 2020년도 국세수입 예산

정부안 대비 422억원이 감액된 291조 9,969억원으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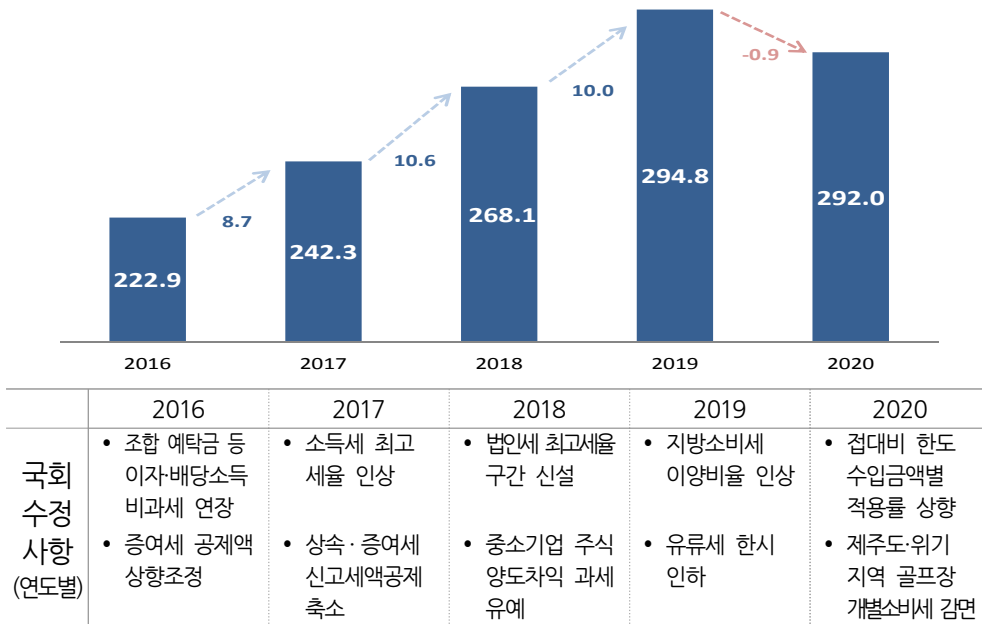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국세수입 예산 추이

2016~2019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  
2020년은 전년 대비 0.9% 감소  
◦ 투자·산업 지원 등 중심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개정세법에 따른 주요 세수변동 항목

◦ 투자 및 소비활성화 지원, 서민·취약계층 지원,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 중점

| 국 세                                                                                                                                                                                                                                                                                                                                                                                                                                                                                                                                                                                                                                                                                                                                                                                                                                                                                       | 지 방 세                                                                                                                                                                                                                                                                                                                                                                                                                                                                              |
|-------------------------------------------------------------------------------------------------------------------------------------------------------------------------------------------------------------------------------------------------------------------------------------------------------------------------------------------------------------------------------------------------------------------------------------------------------------------------------------------------------------------------------------------------------------------------------------------------------------------------------------------------------------------------------------------------------------------------------------------------------------------------------------------------------------------------------------------------------------------------------------------|------------------------------------------------------------------------------------------------------------------------------------------------------------------------------------------------------------------------------------------------------------------------------------------------------------------------------------------------------------------------------------------------------------------------------------------------------------------------------------|
| <p>○ 소득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 ▲</li> <li>·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 ▼</li> <li>·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연장(법) ▼</li> <li>·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 ▲</li> <li>·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연장(소) ▼</li> <li>· 공익사업용 대토보상 감면을 상향(소) ▼</li> <li>·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확대(법) ▼</li> <li>·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을 상향(법) ▼</li> <li>·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법) ▼</li> </ul> <p>○ 소비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유흥장소 면세농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인하(부) ▲</li> <li>· 탁주·맥주의 종량세 전환(주) ▲</li> <li>·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 ▼</li> <li>·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연장(부) ▼</li> <li>·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한시 인하(개소) ▼</li> </ul> <p>○ 재산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 ▼</li> <li>·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상) ▼</li> </ul> <p>○ 기타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관세환급 허용(관) ▼</li> <li>· 국립대학법인의 세법상 지위 조정(국기) ▼</li> </ul> | <p>○ 소득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개인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 ▼</li> <li>·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감면 방식 합리화 ▼</li> <li>· 국세법과 공유하는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명확화 ▼</li> </ul> <p>○ 소비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li> </ul> <p>○ 재산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편 —</li> <li>· 4주택 이상 다주택자 표준세율 적용 ▲</li> </ul> <p>○ 기타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법인의 세법상 지위 조정 ▼</li> </ul> |

주: 우측 화살표는 항목별 세수효과 증감, 파란색 음영은 국회 수정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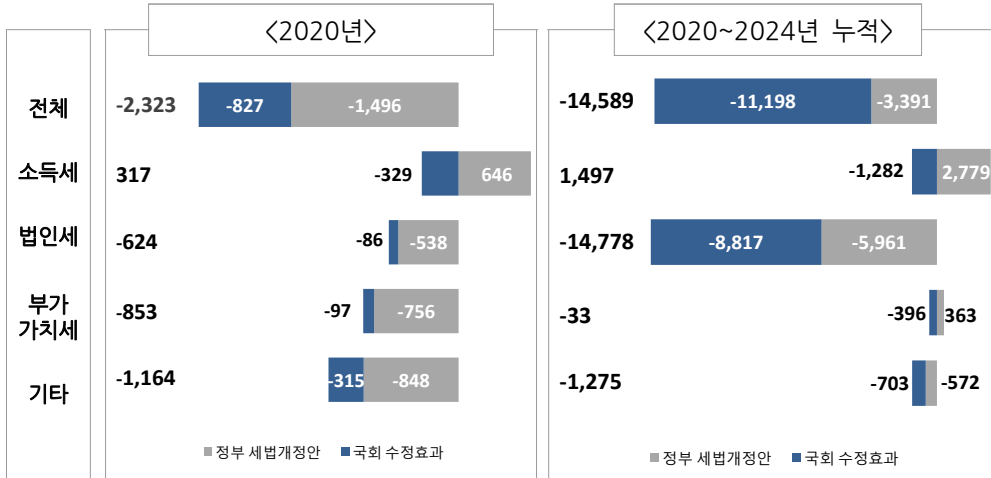
(소)소득세, (법)법인세, (부)부가가치세, (개소)개별소비세, (주)주세, (상)상속·증여세, (관)관세, (국기)국세기본법

### 개정세법의 세수효과(NABO추정)

2020년  $\Delta 2,323$ 억원, 2020~2024년 누적  $\Delta 14,589$ 억원

◦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발생<sup>1)</sup>

(단위: 억원)



주: 1) 2020~2024년 누적 세수효과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의 징수시차를 반영

1.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이며,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집계하는 누적법 방식으로 추정

2.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국세 감소분은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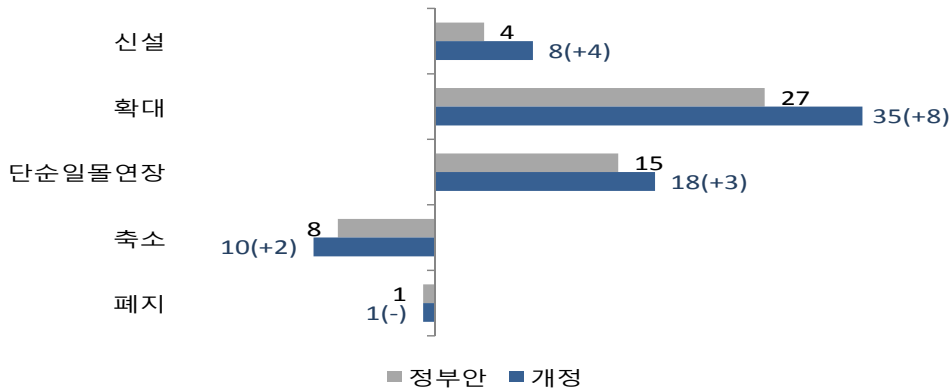
자료: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조세지출 정비 건수

총72건, 확대 61건 / 축소 11건

◦ 국회수정 건수: 총17건(확대 15건 / 축소 2건)

(단위: 건)



주: 1. 항목 수는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조문)을 기준으로 작성

2. ( )은 정부안 대비 증감항목 수

자료: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2020년 시행 개정세법의 세목별 주요 내용

### □ 국세기본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단위: 억원)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심사청구 의결<br>기관 조정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현행 국세청장<br>에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로 조정                                                     | -                 | (‘16) 각하결정 사유<br>추가                                                |
| 수정신고 및<br>기한 후 신고<br>시의 가산세<br>감면율 조정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br>- 1개월 이내~2년 이내 : 90~10%<br>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br>-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 50~20% | -                 | (‘08) 수정신고시<br>가산세 감면율<br>세분화<br>(‘10) 기한 후 신고 시<br>가산세 감면율<br>세분화 |
| 가산세 납세의무<br>성립시기 조정                   | 가산세 종류별로 납세의무 성립시기<br>를 각각 규정                                                                 | 추정곤란              | -                                                                  |

### □ 소득세법 (조특법 중 소득세분야 포함)

-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개정

(단위: 억원)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신용카드 등<br>사용금액에<br>대한 소득공제<br>일물연장 및<br>추가공제 신설 | 일물 연장 및 추가공제 대상 추가<br>- 2019.12.31. → 2022.12.31.<br>- 신문 구독료를 도서·공연·미술관<br>·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 항목에<br>추가 | (‘21) △19 <sup>1)</sup><br>(연간) △19<br>(누적) △39 | (‘19) 총급여 7천<br>만원 이하 근<br>로자의 미술관<br>박물관 입장료<br>30% 추가공제 |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연금계좌 세액<br>공제 확대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br>종합소득자의 연금계좌 납입한도<br>확대<br>- 연금저축: 400만원 → 600만원<br>- 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br>→ 900만원<br>- 적용기한 2022.12.31  | (‘20) △176<br>(연간) △277<br>(누적) △831 | (‘15) 납입한도 400<br>만원, 퇴직연금<br>합산시 700<br>만원<br>(‘17) 종합소득 1억원<br>초과(총급여액<br>1.2억원 초과)<br>자의 납입한도<br>300만원으로<br>축소, 퇴직연금<br>합산시 700만원 |
|                                   | ISA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의 추가<br>납입 허용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br>-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21) △99<br>(연간) △140<br>(누적) △560  |                                                                                                                                      |
| 근로소득<br>공제한도 신설                   | 공제한도 신설<br>- 한도: 2천만원                                                                                                         | (‘20) 647<br>(연간) 754<br>(누적) 3,772  | (‘14) 근로소득공제율<br>축소                                                                                                                  |
| 내국인<br>우수인력의<br>국내 복귀 시<br>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신설<br>- 5년간 근로소득세의 50%<br>- 적용기한 2022.12.31                                                                            | 추정곤란                                 | 신설                                                                                                                                   |
| 국내주식과<br>해외주식간<br>양도소득<br>손익통산    |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 범위 확대<br>국내 주식 외에 외국상장 주식 등의<br>양도소득 추가<br>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축소<br>국내·해외 주식 각각 250만원 공제<br>→ 국내·해외주식 합산하여 250<br>만원 공제 | 추정곤란                                 | 신설                                                                                                                                   |
| 대토보상에<br>대한 양도소득세<br>감면율 인상       |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br>15% → 40%                                                                                                     | (‘20) △37<br>(연간) △37<br>(누적) △73    | (‘15) 양도소득세액의<br>20% 감면 또는<br>과세 이연<br>(‘16) 양도소득세<br>감면율 15%로<br>인하                                                                 |

주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였으며, 이 경우 일몰연장이 가정됨에 따라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1. 누적은 원칙적으로 5년(2020년~2024년)을 의미하되 2021년 이후 세수효과가 발생할  
경우 세수효과 최초 발생연도부터 2024년까지를 누적
2. 다음 연도에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2021년의 세수효과를 표기함

□ 법인세법 (조특법 중 법인세분야 포함)

-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

(단위: 억원)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생산성향상<br>시설 투자세액<br>공제제도 확대       | 공제율 상향(대기업 1년 한시)<br>- 중견·중소 3·7%→5·10%<br>- 대기업 1%→2%<br><br>적용기한 2021.12.31.                                                           | (‘20) △1,134<br>(연간) △5,834<br>(누적) △17,502 | (‘15) 지원대상에 중견<br>기업(5%)추가<br>(‘18) 대기업 및 중견<br>기업 공제율<br>축소 적용기한<br>1년 연장                                      |
| 영상콘텐츠<br>제작비용 세액<br>공제 확대         | 적용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br>- 현행(드라마 및 애니메이션)+<br>다큐멘터리 전체로 확대 및 오락<br>물 추가<br><br>적용기한 2022.12.31.                                                | (‘20) △48<br>(연간) △366<br>(누적) △1,463       | (‘16) 신설<br>(‘17) 시행                                                                                            |
| 5G 이동통신<br>기지국 시설<br>투자세액공제<br>확대 | 공제대상 비용 확대<br>- 현행(기지국 시설투자비)<br>+ 공사비 추가<br><br>적용기한 2020.12.31.                                                                        | (‘20) △38<br>(연간) △189<br>(누적) △378         | (‘18) 신설<br>(‘19) 시행                                                                                            |
| 접대비<br>손금산입<br>한도 상향              | 기본한도(만원)<br>- 중소기업 2,400→3,600<br><br>적용률(%)<br>- 100억원 이하 0.2→0.3<br>- 500억원 이하 0.1→0.2                                                 | (‘21) △1,777<br>(연간) △1,777<br>(누적) △7,108  | (‘16) 중소기업<br>기본한도 상향<br>(1,800→<br>2,400만원)                                                                    |
| 경력단절여성<br>재고용기업<br>세액공제<br>요건 완화  | 기업요건 완화<br>- 해당 기업→현행+동종 기업<br><br>퇴직사유 확대<br>- 현행(임신, 출산, 육아)+결혼,<br>자녀교육 추가<br><br>경력단절 기간<br>- 현행(3년 이상 10년 미만)→<br>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 | (‘21) △128<br>(연간) △128<br>(누적) △256        | (‘15) 중소기업 경력<br>단절여성 재고용<br>세액공제 신설<br>(‘16) 퇴직사유에<br>임신 추가<br>(‘17) 경력단절 기간<br>확대(3년 이상<br>5년 미만에서<br>10년 미만) |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                                                                                                                                                                                                                                                                                                                                                         |                   | (‘18) 적용대상 기업에<br>중견기업 추가;<br>공제율은 인건비<br>의 30%(중견<br>15%) 상향 |
| 내국법인의<br>소재·부품·<br>장비 전문기업<br>출자·인수에<br>대한 과세특례<br>신설 | <p>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외국<br/>법인 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방식: 주식·지분취득,<br/>사업·자산양수</li> <li>- 주식취득 비율 : 외국법인 출자<br/>총액 50% 이상<br/>(또는 경영권+30% 이상)</li> <li>- 공제율: 인수가액의 5%(중견<br/>7%, 중소 10%) 세액공제</li> </ul> <p>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br/>기업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br/>5% 세액공제</li> </ul> | 추정곤란              | 신설                                                            |

주: 1. 누적은 원칙적으로 5년(2020년~2024년)을 의미하되 2021년 이후 세수효과가 발생할  
경우 세수효과 최초 발생연도부터 2024년까지를 누적  
2. 다음 연도에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2021년의 세수효과를 표기함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조특법 중 관련분야 포함)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중소기업과 교통·유통 및 산업 등에 대한 조세 지원 방향으로 개정

(단위: 억원)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지방소비세<br>이양비율 인상                          | 부가가치세<br>이양비율 15%→21%                                      | ('20) △51,383<br>(연간) △55,895<br>(누적) △279,473 | ('10) 5%<br>(‘14) 5% → 11%<br>(‘19) 11% → 15%                    |
| 영세 개인음식점<br>면세농산물 의<br>제매입세액공<br>제율 인상 연장 | 8/108 → 9/109의 적용기한 2년<br>연장<br>- 2019.12.31.→ 2021.12.31. | ('20) - <sup>1)</sup><br>(연간) -<br>(누적) -      | (‘09) 개인음식점<br>6/106→8/108<br>(‘17) 8/108→9/109                  |
| 과세유흥장소<br>면세농산물<br>의제매입세액<br>공제율 인하       | 4/104 → 2/102                                              | ('20) 31<br>(연간) 32<br>(누적) 161                | (‘10) 6/106→4/104                                                |
| 외국인 관광객<br>부가가치세<br>환급특례 연장               |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 1년<br>연장<br>- 2019.12.31.→ 2020.12.31.    | ('20) - <sup>1)</sup><br>(연간) -<br>(누적) -      | (‘18) 숙박용역 환급<br>특례 시행<br>(‘18, ‘19) 미용성형<br>의료용역<br>환급 일몰<br>연장 |
| 주류 종량세<br>전환                              | 탁주·맥주: 종량세 전환<br>탁주: 41,700원/kl<br>맥주: 830,300원/kl         | ('20) △254<br>(연간) 14<br>(누적) 71               | -                                                                |
| 수소전기차<br>개별소비세<br>감면 연장                   | 적용기한 3년 연장<br>2020.1.1.~2022.12.31.                        | ('20) - <sup>1)</sup><br>(연간) -<br>(누적) -      | (‘16) 신설                                                         |
| 노후차 개별<br>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액 70% 감면<br>2020.1.1.~2020.6.30.                      | ('20) △471<br>(연간) △471<br>(누적) △471           | (‘09) 70%, 8개월<br>(‘17) 70%, 7개월<br>(‘19) 70%, 1년                |
| 증권거래세율<br>인하                              | 바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br>세율 인하: 0.5%→0.45%                       | ('20) △191<br>(연간) △208<br>(누적) △1,038         | (‘19) 탄력세율인하                                                     |

주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였으며, 이 경우 일몰연장이 가정됨에 따라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1. 누적은 원칙적으로 5년(2020년~2024년)을 의미하되 2021년 이후 세수효과가 발생할 경우 세수효과 최초 발생연도부터 2024년까지를 누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기업상속공제 제도 및 최대주주 부담 완화,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일부 개정

(단위: 억원)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기업상속공제<br>사후관리요건<br>완화                            | 사후관리기간 단축: 7년<br>고용유지의무 완화<br>-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br>80% 이상 또는 총급여액<br>평균의 80% 이상<br>- 사후관리기간 평균 연도별<br>정규직 근로자 100% 이상<br>또는 총급여액 평균의<br>100% 이상 | 추정곤란              | —        |
| 최대주주<br>할증평가 제도<br>완화                             | 할증률 완화<br>- 지분율 관계없이 일반 20%,<br>중소기업 할증평가 적용 제외                                                                                             | 추정곤란              | —        |
| 공익법인이<br>출연받은<br>재산에 대한<br>의무지출관리<br>강화           | 의무지출 공익법인 확대<br>- 모든 공익법인(대통령령으로<br>정하는 소규모 법인, 종교법인 등<br>제외)                                                                               | 추정곤란              | —        |
| 외부감사대상<br>공익법인 확대<br>및 감사인 지정<br>제도·회계<br>감리제도 도입 |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확대<br>- 수입금액 기준 추가<br>감사인 지정제도 도입<br>- 자체(4년)+지정(기재부장관, 2년)<br>회계감리제도 도입<br>- 기재부장관 외부 위탁 가능                                    | 추정곤란              | —        |

## □ 관세법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체납자 처벌 강화 등의 방향으로 일부 개정

(단위: 억원)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관세청장의<br>납세자 권리<br>보호 신설            |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관에<br>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                                                            | 추정곤란                               | 신설       |
| 관세 고액·상<br>습체납자에 대한<br>감치명령제도<br>신설 |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br>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억원<br>이상인 경우 30일 범위에서 검사<br>에게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결정으로<br>감치 | 추정곤란                               | 신설       |
| 보세판매장 구<br>입물품 환불 시<br>관세 환급 허용     |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자진신고<br>하여 과세통관하여 국내 반입한 이후<br>에도 환불 가능, 환불 시 납부한<br>관세액 환급<br>*2021년부터 시행예정     | (‘21) △70<br>(연간) △70<br>(누적) △280 | —        |

##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포함)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주택 취득세율 적용 보완,  
다주택자 취득세 특례 배제 등의 방향으로 일부 개정

(단위: 억원)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지방소비세율<br>인상                                      |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br>전환되는 비율을 현행 15%에서<br>21%로 인상하고, 취득세 보전분<br>6%에 관한 내용을 삭제           | (‘20) 51,383<br>(연간) 55,895<br>(누적) 279,473 | (‘10) 5%<br>(‘14) 5% → 11%<br>(‘19) 11% → 15%     |
| 6억원 초과<br>9억원 이하<br>주택유상거래<br>사선형 점증구조<br>취득세율 도입 | 취득가액 6억원~9억원 구간 주택<br>유상거래 취득시 매150만원<br>단위로 취득세율을 0.01%씩<br>높이는 사선형 점증구조 세율<br>체계 도입 | 추정곤란                                        | (‘13) 2~4% → 1~3%<br>세율적용<br>기준에서<br>보유주택 수<br>배제 |

| 안건                                                  | 개정내용                                          | 세수효과<br>(NABO 추정)                  | 최근 개정 연혁 |
|-----------------------------------------------------|-----------------------------------------------|------------------------------------|----------|
| 1세대 4주택<br>이상 해당 주택<br>취득시 주택<br>유상거래 취득<br>세율 적용제외 |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br>대해 주택 취득시 표준세율<br>(4%) 적용 | 추정곤란                               | —        |
| 국립대학법인의<br>세법상 지위<br>국가와 동일<br>간주                   |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와 동일하게<br>간주하여 지방세 면제               | (’20) △33<br>(연간) △174<br>(누적) △35 | —        |



# I

## 개 관

1. 심사대상
2. 국회 의결 과정
3.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 최근 개정세법과의 비교
5. 조세지출 개정 항목



# I. 개 관

## 1. 심사대상

- 2019년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72회국회(임시회) 및 제373회국회(임시회)  
심사대상 세법은 총 34개 법률로, 국세 30개 및 지방세 4개로 구성

2019년 심사대상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법

|             | 소관 위원회  | 세법                                                                                                                                                                                                                                                                                                                                                                                                               |
|-------------|---------|------------------------------------------------------------------------------------------------------------------------------------------------------------------------------------------------------------------------------------------------------------------------------------------------------------------------------------------------------------------------------------------------------------------|
| 국세<br>(30개) | 기획재정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처벌절차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li> <li>아동수당세법안, 청년세법안, 사회복지세법안, 국세청법안,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sup>1)</sup></li> </ul> |
| 지방세<br>(4개) |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

주: 1) 아동수당세법안 등 5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임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심사대상 개정안은 국세 753건, 지방세 115건 등 총 868건임
  -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315건, 소득세법 99건, 부가가치세법 5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건, 관세법 45건, 법인세법 40건 등 총 753건임
    - － 정부안 19건, 의원안 734건<sup>1)</sup> 등이며, 정부안은 1개 개정안에 다수의 개정 항목을 포함
  -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50건, 지방세법 49건, 지방세 기본법 10건, 지방세징수법 6건 등 총 115건임
    - － 정부안 4건, 의원안 111건

## 2. 국회 의결 과정

### 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과정

#### (1)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 2019년 11월 8일 상정 이후 11월 29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2차례에 걸쳐 국세 세법개정안 753건 심사
  - (11.8.) 국세 세법개정안 158건 신규 상정 및 조세소위원회 회부
  - (11.11.) 조세소위원회에서 국세 736건 논의 시작
    - － 신규 상정법안 158건, 기존 계류법안 578건 등 총 736건
  - (11.13.~11.28.) 조세소위원회 2~11차 회의에서 국세기본법 등 안건 논의
    - － 소위 중 조세특례제한법 14건,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각각 1건의 개정안이 추가 상정되어 총 753건
  - (11.29.) 조세소위원회 제12차 회의 및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18개 법률안 가결
    - － 위원회 대안(15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 정부안(3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2건은 원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은 수정가결

1)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 (2)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 2019년 11월 11일 상정 이후 11월 21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지방세 세법개정안 115건을 심사
  - (11.11.) 지방세 세법개정안 113건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11.19.)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지방세 113건 논의 시작
  - (11.20.~11.21.) 법안심사소위원회 제6~7차 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등 안건 논의 및 가결
    - － 소위 중 지방세법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건 등 2건의 개정안이 추가 상정되어 총 115건을 심사
  - (11.27.)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개 법률안 가결
    - － 위원회 대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3)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2019년 11월 27일 조세 관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22개 가운데 21개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sup>2)</sup>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국세 18개 법률안(대안 15개, 정부안 3개) 중 15개(대안 12개, 정부안 3개)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그 외 3개(인지세법·관세사법·세무사법)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12.30.기준)
    -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지방세 관련 4개 대안 중 2개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그 외 2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12.30.기준)
  - 위원회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법률안<sup>3)</sup>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자동부의(「국회법」 제85조의3②)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94)의 경우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반영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도 포함

- 의원안: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법인세법), 최저한세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국세 법률안
  - (12.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위원회 대안 14개(기획재정위원회 12개, 행정안전위원회 2개), 정부안 3개, 의원안 4개가 본회의에 부의<sup>4)5)</sup>
- 12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국세 법률안 3개가 가결되었고, 23일 국세 법률안 2개가 가결된 후 27일 국세 법률안 10개 및 지방세 법률안 2개가 가결됨으로써 총 17개의 법률안이 가결됨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12.10.)
    - : 자동부의된 조세 관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대안 12개, 정부안 3개 및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2개가 상정되었으며 이 중 3개 법률안이 가결됨
    - 국세(3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2.23.)
    -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 9개, 정부안 3개가 상정되었으며 이 중 2개 법률안이 수정가결됨
    - 국세(2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2.27.)
    -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 7개, 정부안 3개 및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2개가 상정되었으며 12개 법률안이 수정가결됨
    - 국세(10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 지방세(2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4) 「국회법」 제85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담당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19개, 행정안전위원회 2개

#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과정

(단위: 건, 개)

| 번호                | 법률명                              | 세법<br>개정안<br>(정부안) | 부수법안<br>지정<br>(11.27) | 위원회<br>가결<br>(11.27)<br>(11.29) | 본회의<br>(제371회)<br>가결<br>(12.10) | 본회의<br>(제372회)<br>가결<br>(12.23) | 본회의<br>(제373회)<br>가결<br>(12.27) |
|-------------------|----------------------------------|--------------------|-----------------------|---------------------------------|---------------------------------|---------------------------------|---------------------------------|
| 1                 | 국세기본법                            | 36 (1)             | 1 (1)                 | 1                               | -                               | -                               | 1                               |
| 2                 | 소득세법                             | 99 (2)             | 2 (1)                 | 1                               | 1                               | -                               | -                               |
| 3                 | 법인세법                             | 40 (2)             | 2 (1)                 | 1                               | 1                               | -                               | -                               |
|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7 (1)             | 1 (1)                 | 1                               | -                               | -                               | 1                               |
| 5                 | 종합부동산세법                          | 10 (-)             | -                     | -                               | -                               | -                               | -                               |
| 6                 | 부가가치세법                           | 51 (1)             | 1 (1)                 | 1                               | -                               | -                               | 1                               |
| 7                 | 개별소비세법                           | 16 (-)             | -                     | -                               | -                               | -                               | -                               |
| 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4 (1)              | 1 (1)                 | 1                               | -                               | -                               | 1                               |
| 9                 | 주세법                              | 9 (1)              | 1 (1)                 | 1                               | -                               | -                               | 1                               |
| 10                | 인지세법                             | 6 (-)              | -                     | 1                               | -                               | -                               | -                               |
| 11                | 증권거래세법                           | 8 (-)              | 1 (1)                 | 1                               | -                               | 1                               | -                               |
| 12                | 교육세법                             | 2 (1)              | 1 (1)                 | 1                               | -                               | -                               | 1                               |
| 13                | 농어촌특별세법                          | 5 (1)              | 1 (1)                 | 1                               | -                               | -                               | 1                               |
| 14                | 국세징수법                            | 14 (1)             | 1 (1)                 | 1                               | -                               | -                               | 1                               |
| 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5 (1)              | 1 (1)                 | 1                               | -                               | -                               | 1                               |
| 16                | 조세범 처벌법                          | 9 (-)              | -                     | -                               | -                               | -                               | -                               |
| 17                | 조세범 처벌절차법                        | 2 (-)              | -                     | -                               | -                               | -                               | -                               |
| 18                | 조세특례제한법                          | 315 (1)            | 3 (1)                 | 1                               | 1                               | -                               | -                               |
| 19                | 관세법                              | 45 (1)             | 1 (1)                 | 1                               | -                               | -                               | 1                               |
| 20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br>환급에 관한 특례법   | 1 (-)              | -                     | -                               | -                               | -                               | -                               |
| 2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br>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2 (1)              | 1 (1)                 | 1                               | -                               | 1                               | -                               |
| 22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br>관한 법률          | 1 (-)              | -                     | -                               | -                               | -                               | -                               |
| 23                | 기타(관세사법 등 8개 법률)                 | 26 (3)             | -                     | 2                               | -                               | -                               | -                               |
| 소계(국세 30개 법률)     |                                  | 753 (19)           | 19(15) <sup>1)</sup>  | 18                              | 3                               | 2                               | 10                              |
| 28                | 지방세기본법                           | 10 (1)             | 1(-)                  | 1 <sup>2)</sup>                 | -                               | -                               | 1                               |
| 29                | 지방세법                             | 49 (1)             | 1(-)                  | 1 <sup>2)</sup>                 | -                               | -                               | 1                               |
|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50 (1)             | -                     | 1 <sup>2)</sup>                 | -                               | -                               | -                               |
| 31                | 지방세징수법                           | 6 (1)              | -                     | 1 <sup>2)</sup>                 | -                               | -                               | -                               |
| 소계(지방세 4개 법률)     |                                  | 115 (4)            | 2(-)                  | 4 <sup>2)</sup>                 | -                               | -                               | 2                               |
| 합계(국세·지방세 34개 법률) |                                  | 868 (23)           | 21(15)                | 22                              | 3                               | 2                               | 12                              |

주: 1) 세법 이외 「국가재정법」 등 10개 법률안 제외

2)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의결(11.27.) 기준

1. ( ) 안은 정부제출 개정안 건수

2. 부수법안 지정은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법률안 수

3. 위원회 가결은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세법개정안 수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역대 세법개정안 의결과정 비교

- 국세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10여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에 법안이 개정되며, 2014년 이후 본회의 의결일이 12월 초로 앞당겨 짐
- 국세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는 11월 중순에 법안 심사를 시작하여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12월에 심사를 마치고, 12월 본회의에서 의결
  - 2014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제도가 신설되었고, 2014~2016년 3개 연도는 예산안 법정기한을 준수
  - 2017년에는 12월 1일~10일, 2018년에는 12월 7일~8일 법률안 가결
  - 2019년에는 12월 10일, 23일, 27일에 걸쳐 법률안 가결

세법개정안 의결과정 추이: 2013~2019년

|      | 조세소위원회 심사<br>(국세)       | 부수법률안 지정<br>(세법관련)          | 본회의 가결<br>(국세, 지방세)                                                 |
|------|-------------------------|-----------------------------|---------------------------------------------------------------------|
| 2013 | 12.2.~12.31.<br>15회 심사  | -                           | 2013.12.26. 지방세 2개<br>2014.1.1. 국세 17개                              |
| 2014 | 11.14.~11.30.<br>9회 심사  | 11.26. 14건 지정<br>(자동부의 14건) | 12.2. 국세 8개, 지방세 1개<br>12.29. 지방세 1개(지방세특례제한법)                      |
| 2015 | 11.10.~12.7.<br>12회 심사  | 11.27. 15건 지정<br>(자동부의 15건) | 12.2. 국세 12개<br>12.9. 지방세 2개                                        |
| 2016 | 11.7.~11.30.<br>10회 심사  | 11.30. 31건 지정<br>(자동부의 20건) | 12.2. 국세 12개<br>12.8 지방세 4개                                         |
| 2017 | 11.15.~11.30.<br>9회 심사  | 11.29. 25건 지정<br>(자동부의 21건) | 12.1. 국세 9개<br>12.2. 국세 1개<br>12.5. 국세 2개(소득세, 법인세)<br>12.8. 지방세 4개 |
| 2018 | 11.16.~12.5.<br>10회 심사  | 11.28. 28건 지정<br>(자동부의 28건) | 12.7. 국세 4개, 지방세 3개<br>12.8. 국세 17개, 지방세 1개                         |
| 2019 | 11.11.~11.29.<br>12회 심사 | 11.27. 22건 지정<br>(자동부의 21건) | 12.10. 국세 3개<br>12.23. 국세 2개<br>12.27. 국세 10개, 지방세 2개               |

주: 국세를 중심으로 의결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세는 본회의 가결날짜만 표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회복 지연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투자 및 소비활성화 지원, 서민·중산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
  -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인상하고, 공제한도 설정 및 과세체계 전환 등

####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경기활력 제고를 목표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부문을 지원하고, 소비 및 고용 진작을 위해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개정항목이 다수 포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공제를 확대
  - 고용 지원 측면에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서민·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항목도 포함
  -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50세 이상의 연금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확대
  -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일몰 연장 및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인상
  - 2019년 4%p(11%→15%) 인상에 이어, 2020년 6%p(15%→21%) 추가 인상
- 공제한도 설정·감면요건 완화·과세체계 조정 등 조세체계를 정비
  - 근로소득 공제수준의 조정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한도를 신설
  -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맥주 종가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 개정세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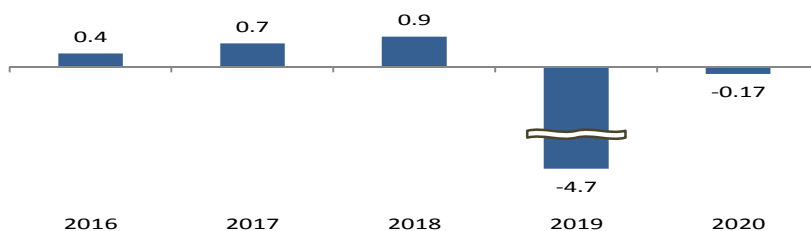
- 투자 지원 및 소비 진작 등과 관련한 개정항목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5년 간 주로 법인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개정세법으로 세수는 2020년 2,323억원 감소하고, 법인세 등 징수시차를 감안하면 2020~2024년 누적 세수감소 규모는 총 1조 4,589억원 수준<sup>6)</sup>
    - － 2020~2024년 법인세 감소분은 1조 4,778억원
    - －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항목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7,108억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5,797억원) 등

## 4. 최근 개정세법과의 비교

- 연도별 세수효과(시행연도 기준)를 비교하면 2016~2018년 증가하였다가 2019년 4.7조원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0.1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sup>7)</sup>
  - 최근의 세법개정은 고용지원 외에도 과세기반 확충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투자·소비지원 확대에 보다 중점
    - － (2016~2018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 － (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유류세 한시인하 등
    - － (2020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등

[그림 1] 연도별 개정세법의 세수효과(시행연도 기준): 2016~2020년

(단위: 조원)



주: 1. 2016~2019년은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8.12.을 참고 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  
 2.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국세감소분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6)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기준연도(2019년) 대비 해당연도까지 증감한 누적세수를 기준으로 추정함(‘누적법’)

7) 2019~2020년의 경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국세감소분은 포함하지 않음

## 5. 조세지출 개정 항목

### 조세지출 항목의 심사 경과<sup>8)</sup>

- 국회의 심사를 통해 조세지출 항목 86건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한 항목은 72건<sup>9)</sup>임
  - 조세지출 정비 관련 72건 중 정부안은 55건<sup>10)</sup>, 의원안은 17건
    - 정부안 중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항목은 46건, 축소하는 항목은 9건
    - 의원안 중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항목은 15건, 축소하는 항목은 2건
  - 지방세 특례제도 44건(정부안 42건, 의원안 2건)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12.30. 기준)

### 개정된 조세지출 항목의 특징

- 정비된 72건 중 조세지출 확대방향의 항목은 61건(신설 8, 확대 35, 단순 일몰연장 18건), 축소방향의 항목은 11건(폐지 1, 축소 10건)임
  - 이 중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어 반영된 항목은 확대 15건, 축소 2건 등 총 17건임
  -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 및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
    - (신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및 연장, 신문 구독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1년 유예)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장
  - 조세지출 축소는 실효성·형평성 등을 감안
    - (폐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 (축소)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하
  -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34건 중 단순 일몰연장된 항목은 18건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정부안에 일몰연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몰이 연장된 경우는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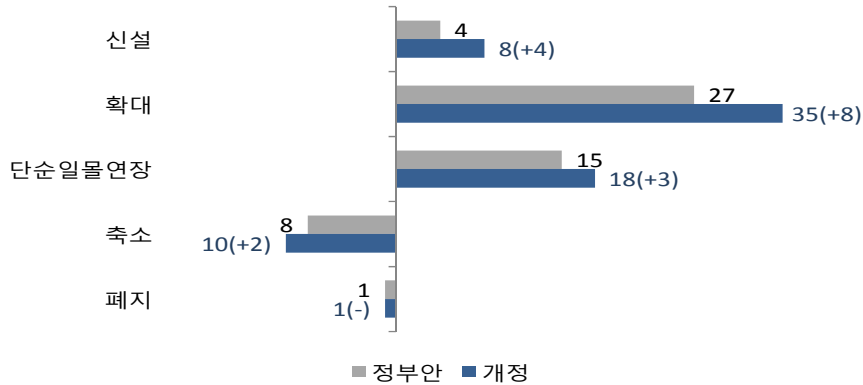
8) 본 절에서 '조세지출 항목'은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함

9) 나머지 14건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10) 정부안 55개 중 동일 항목에 대해 발의된 의원안이 있는 경우는 34개임

[그림 2] 정비유형 별 조세지출 항목 수: 정부안 vs. 개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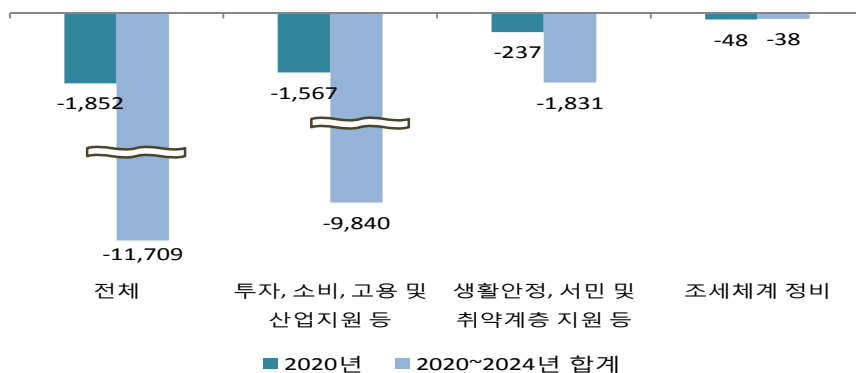


주: ( )는 정부안 대비 개정 항목의 증감 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0년 1,852억원(2020~2024년 총 1조 1,709억원) 감소하고, 투자·소비·고용 및 산업지원 중심으로 발생
- 투자·소비·고용 및 산업지원 목적의 조세지출 항목의 개정 세수효과는 2020년 1,567억원(2020~2024년 총 9,840억원) 감소

[그림 3] 지원분야 별 조세지출의 세수효과: 2020년 vs. 2020~2024년 합계

(단위: 억원)



주: 1. 세수효과는 정수기준이며,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집계하는 누적법 방식  
 2. 지원분야는 정부 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019.7.)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분석」, 2019.10.을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

# II

## 2020년도 확정 국세수입 예산

1. 2020년도 국세수입 예산
2. 2020년도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II. 2020년도 확정 국세수입 예산

### 1. 2020년도 국세수입 예산

-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른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은 정부안(292조 391억원) 대비 422억원이 감액된 291조 9,969억원으로, 2019년 추경예산(294조 7,919억원) 대비 2조 7,950억원(△0.9%) 감소한 수준
-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131억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대상 확대(△42억원)로 개별소비세 173억원 감액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등으로 부가가치세 67억원 감액
  - 공익사업용 대토보상 감면을 상향 등으로 소득세 44억원 감액

2020년도 국세수입 예산

(단위: 억원, %)

| 세 목          | 2019<br>추경예산 | 2020      |      |           | 증감       |       |
|--------------|--------------|-----------|------|-----------|----------|-------|
|              |              | 정부안       | 증감   | 확정        | 추경대비     | %     |
| 총국세          | 2,947,919    | 2,920,391 | △422 | 2,919,969 | △27,950  | △0.9  |
| 일반회계         | 2,871,769    | 2,841,557 | △383 | 2,841,174 | △30,595  | △1.1  |
| ○ 내국세        | 2,556,304    | 2,511,198 | △313 | 2,510,885 | △45,419  | △1.8  |
| 1. 소득세       | 803,678      | 884,222   | △44  | 884,178   | 80,500   | 10.0  |
| 2. 법인세       | 792,501      | 644,192   | △2   | 644,190   | △148,311 | △18.7 |
| 3. 상증세       | 72,279       | 83,101    | △27  | 83,073    | 10,794   | 14.9  |
| 4. 부가가치세     | 687,519      | 688,777   | △67  | 688,710   | 1,191    | 0.2   |
| 5. 개별소비세     | 102,995      | 102,452   | △173 | 102,279   | △716     | △0.7  |
| 6. 증권거래세     | 45,339       | 43,848    | —    | 43,848    | △1,491   | △3.3  |
| 7. 인지세       | 9,439        | 10,523    | —    | 10,523    | 1,084    | 11.5  |
| 8. 과년도수입     | 42,554       | 54,084    | —    | 54,084    | 11,530   | 27.1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47,766      | 157,273   | —    | 157,273   | 9,507    | 6.4   |
| ○ 관세         | 90,557       | 87,930    | △18  | 87,912    | △2,645   | △2.9  |
| ○ 교육세        | 48,648       | 51,947    | △52  | 51,894    | 3,246    | 6.7   |
| ○ 종합부동산세     | 28,494       | 33,210    | —    | 33,210    | 4,716    | 16.6  |
| 특별회계         | 76,150       | 78,835    | △39  | 78,795    | 2,645    | 3.5   |
| ○ 주세         | 34,351       | 33,275    | —    | 33,275    | △1,076   | △3.1  |
| ○ 농특세        | 41,799       | 45,559    | △39  | 45,520    | 3,721    | 8.9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회의 세법 심의 결과, 정부안 대비 2020년 △422억원, 향후 5년간 △2,911억원 추가 세수 감소효과 발생

- 소득세(5년간 △974억원):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임원퇴직소득 과세강화 경과조치 설정, 공익사업용 대토보상 감면율 상향 등
- 법인세(5년간 △1,874억원):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 기간 연장(중소·중견기업), 의약품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 부가가치세(5년간 △55억원):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등
- 그 외 세목(5년간 △8억원):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등

국회 확정 예산에 반영된 항목별 세법개정 세수효과 변동내역(정부 추계, 순액법)

(단위: 억원)

| 변 동 항 목                     | 세 수 변 동     |               |
|-----------------------------|-------------|---------------|
|                             | 2020        | 2020~2024     |
| <b>국 세 수 입</b>              | <b>△422</b> | <b>△2,911</b> |
| <b>소득세</b>                  | <b>△44</b>  | <b>△974</b>   |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 —           | △178          |
| -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           | △152          |
| - 공익사업용 대토보상 감면율 상향         | △42         | △42           |
| - 기타                        | △2          | △602          |
| <b>법인세</b>                  | <b>△2</b>   | <b>△1,874</b> |
| -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       | —           | △1,120        |
| -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 —           | △568          |
| - 기타                        | △2          | △186          |
| <b>부가가치세</b>                | <b>△67</b>  | <b>△55</b>    |
|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41         | △55           |
| - 기타                        | △26         | —             |
| <b>기타 세목</b>                | <b>△309</b> | <b>△8</b>     |
| -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세 등 한시 인하 | △209        | —             |
| - 기타                        | △100        | △8            |

주: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한시상향) 중소·중견기업 기간 연장(1년→2년): '22년 △300억원 '23년 300억원

2. 정부 누적법에 따른 2020~2024년 누적 세수효과는 △17,33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595억원) 대비 △12,784억원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국세수입을 포함한 2020년 총수입은 정부안 482.0조원 대비 0.2조원이 감액된 481.8조원으로 확정, 2019년 추경예산(476.4조원) 대비 5.4조원(1.1%) 증가한 수준
- 국세수입 292.0조원
    - 위기지역 골프장 개소세 감면 등으로 정부안 292.0조원 대비 422억원 감액,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2.8조원(△0.9%) 감소
  - 세외수입 27.9조원
    - 정부안 27.8조원 대비 0.1조원 증액,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1.0조원(3.6%) 증가
  - 기금수입 161.9조원
    - 원자력기금 부담금 인하 등으로 정부안 162.1조원 대비 0.2조원 감액,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7.2조원(4.7%) 증가

#### 2020년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

|           | 2018<br>실적 | 2019<br>추경예산 | 2020  |      |       | 증감   |      |
|-----------|------------|--------------|-------|------|-------|------|------|
|           |            |              | 정부안   | 증감   | 최종    | 추경대비 | %    |
| 총수입       | 465.3      | 476.4        | 482.0 | △0.2 | 481.8 | 5.4  | 1.1  |
| 국세수입      | 293.6      | 294.8        | 292.0 | △0.0 | 292.0 | △2.8 | △0.9 |
| 세외수입      | 26.0       | 26.9         | 27.8  | 0.1  | 27.9  | 1.0  | 3.6  |
| 기금수입      | 145.1      | 154.7        | 162.1 | △0.2 | 161.9 | 7.2  | 4.7  |
| - 사회보장기여금 | 64.9       | 69.7         | 73.4  | -    | 73.4  | 3.6  | 5.2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 2020년도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sup>11)</sup>

### (1) 개정 항목의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0~2024년 동안 1조 4,589억원(순액법기준 △1,61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득세(+1,497억원):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3,772억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469억원) 등
  - 법인세(△1.48조원):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7,108억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5,797억원),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378억원) 등
  - 기타(△1,275억원):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673억원) 등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0~2024년

(단위: 억원)

| 〈순 액 법〉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 계     |
|---------|--------|--------|--------|--------|-------|---------|
| 합 계     | △2,323 | △6,542 | 4,690  | 418    | 2,144 | △1,613  |
| 소득세     | 317    | △200   | 34     | 260    | 86    | 498     |
| 법인세     | △624   | △7,784 | 3,922  | 132    | 2,080 | △2,275  |
| 부가가치세   | △853   | 825    | 63     | △10    | △10   | 15      |
| 기타      | △1,164 | 618    | 671    | 36     | △12   | △148    |
| 〈누 적 법〉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 계     |
| 합 계     | △2,323 | △8,865 | △4,175 | △3,757 | 4,531 | △14,589 |
| 소득세     | 317    | 118    | 152    | 412    | 498   | 1,497   |
| 법인세     | △624   | △8,408 | △4,486 | △4,354 | 3,094 | △14,778 |
| 부가가치세   | △853   | △28    | 34     | 25     | 790   | △33     |
| 기타      | △1,164 | △546   | 125    | 161    | 148   | △1,275  |

주: 1.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대비 증가한 세수만 집계하는 방식이며,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임  
 2. 분납 연장, 납기 변경, 가속상각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2024년 이후 순액법에서는 제외하므로, 순액법을 단순 합산시 누적법 금액과 차이가 발생함

11) 본 장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19년) 대비 해당연도까지 증감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산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에 따라 추계한 결과로, 이 경우 일몰연장 법안의 세수변동은 없음

주요 개정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       | 항목                                     | 2020   | '20~'24 누적 |
|-------|----------------------------------------|--------|------------|
| 소득세   | 계                                      | 317    | 1,497      |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647    | 3,772      |
|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91   | △1,469     |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 37     | 549        |
|       | 공익사업용 대토보상 감면율 상향                      | △37    | △73        |
| 법인세   | 계                                      | △624   | △14,778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확대                   | △558   | △5,797     |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      | △896       |
|       |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                    | —      | △7,108     |
|       |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 △38    | △378       |
| 부가가치세 | 계                                      | △853   | △33        |
|       | 과세유흥장소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하             | 32     | 163        |
|       | 취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부가가치세분)              | 22     | 154        |
|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면제                          | △9     | △137       |
|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연장 <sup>1)</sup>       | —      | —          |
| 기타    | 계                                      | △1,164 | △1,275     |
|       | 취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br>(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분) | 180    | 1,262      |
|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                        | △191   | △1,038     |
|       |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한시적 인하            | △120   | △229       |

주: 1) 일몰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비 세수효과: '20년 △66억원, '20~'21년 누적 △132억원

1. 붉은색 음영은 국회 세법 심의 결과 수정된 항목

2. 주요항목만 표시한 것으로 합계 맞지 않을 수 있음

(2)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사항의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는 당초 세법개정안 대비 2020년 △827억원(2020~2024년 누적 △1조 1,198억원) 감소
  -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20~'24년 누적 △7,108억원), 영상컨텐츠 세액공제 대상 추가('20~'24년 누적 △1,463억원),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20~'24년 누적 △378억원) 등이 주요 요인

## □ 국회수정사항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

### ○ 소득세

-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를 위한 적용 배수를 2020년 퇴직하는 경우부터 하향(기준금액의 3배→2배): 5년간 1,645억원 → 549억원(△1,096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25%p 상향: 5년간 0원 → △73억원(△73억원)

### ○ 법인세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상향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 연장(대기업의 경우 1년)으로 확대  
: 5년간 △5,494억원 → △5,797억원(△303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기본공제를 인상(2,400만원→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률을 상향(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002%→0.0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001%→0.002%): 5년간 0원→△7,108억원(△7,108억원)
-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공사비 추가(시행령 개정)  
: 5년간 0원 → △378억원(△378억원)

### ○ 상속세 및 증여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80%에서 100%로 상향함과 동시에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 5년간 0원 → △135억원(△135억원)

### ○ 개별소비세 등(농특세·교육세·부가세 등 포함된 금액)

-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75%를 2년간 한시 감면  
: 5년간 0원 → △220억원(△220억원)
-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대상을 15년 이상 중고차에서 10년 이상 중고차로 하향조정  
: 5년간 △522원 → △673억원(△152억원)<sup>12)</sup>

12)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를 포함

2019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 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 계     |
|-----------------------|------|--------|--------|--------|--------|---------|
| 소득세                   | △329 | △293   | △237   | △229   | △195   | △1,282  |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 △292 | △256   | △219   | △183   | △146   | △1,096  |
| - 공익사업용 대토보상 감면을 상향   | △37  | △37    | —      | —      | —      | △73     |
| - 기타                  | —    | —      | △18    | △46    | △49    | △113    |
| 법인세                   | △86  | △2,396 | △2,233 | 2,047  | △2,054 | △8,817  |
| -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율 상향 | —    | △1,777 | △1,777 | △1,777 | △1,777 | △7,108  |
| - 영상컨텐츠세액공제 확대 연장     | △48  | △482   | △488   | △445   | —      | △1,463  |
| -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 △38  | △340   | —      | —      | —      | △378    |
| - 기타                  | △18  | △289   | 112    | △270   | △277   | △195    |
| 부가가치세                 | △97  | △82    | △72    | △72    | △72    | △396    |
|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연장  | △66  | △66    | —      | —      | —      | △132    |
| - 기타 개정사항             | △33  | △16    | △72    | △72    | △72    | △264    |
| 기타                    | △315 | △170   | △71    | △73    | △74    | △703    |
| -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등 한시 인하 | △120 | △110   | —      | —      | —      | △230    |
| - 기타 개정사항             | △195 | △60    | △71    | △73    | △74    | △473    |
| 합 계                   | △827 | △2,941 | △2,613 | △2,421 | △2,395 | △11,198 |

-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른 2020년 국세수입의 국회예산정책처 수정전망
- 당초 2020년 국세수입 전망치 288조 7,703억원(2019.10.) 대비 827억원 감소한 288조 6,876억원으로 수정
    - －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수정사항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 수정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른 2020년도 국세수입 수정 전망(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            | 202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                     |
|------------|---------------------|--------------|---------------------|
|            | 당초 전망<br>(2019.10.) | 개정세법<br>수정효과 | 수정 전망<br>(2019.12.) |
| 국세         | 2,887,703           | △827         | 2,886,876           |
| 일반회계       | 2,811,764           | △803         | 2,810,961           |
| 소득세        | 881,638             | △329         | 881,309             |
| 법인세        | 643,055             | △86          | 642,969             |
| 상속증여세      | 80,227              | △27          | 80,200              |
| 부가가치세      | 676,545             | △97          | 676,448             |
| 개별소비세      | 100,274             | △174         | 100,100             |
| 증권거래세      | 41,935              | —            | 41,935              |
| 인지세        | 8,655               | —            | 8,655               |
| 과년도수입      | 53,670              | —            | 53,670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7,625             | —            | 157,625             |
| 관세         | 84,460              | △18          | 84,442              |
| 교육세        | 50,161              | △52          | 50,109              |
| 종부세        | 33,519              | △19          | 33,500              |
| 특별회계       | 75,940              | △25          | 75,915              |
| 주세         | 33,308              | —            | 33,308              |
| 농특세        | 42,632              | △25          | 42,607              |

주: 2020년 NABO 국세수입 수정전망은 2019.10. 전망치에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수정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것임

# III

##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및 논의 사항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
3. 법인세
4. 소비세제
5. 재산세제
6. 기타세제
7. 지방세제



## Ⅲ.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및 논의 사항

### 1. 국세기본법

#### 가. 총괄

- 국세기본법 개정은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짐
  -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국세 정보통신망 이용 허용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안대로 개정
- 금전제재 정비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높이고, 감면구간을 세분화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납세의무 자동확정 대상에 포함
- 납세자 권리보호 기관 권한 강화
  - 심사청구 결정을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문기관인 동 위원회를 의결기관화 함
  -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조세 관련 분야 경력요건 추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전문성 제고
  - 조세심판관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중 ‘처분청’에 ‘심판청구 관련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관계인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

## 국세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납세자의 권익(권리)보호</b>                                           |                                                                                        |                                                                                                                                                                              |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br>심사청구 결정<br>(제64조)                            |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br>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br>심의를 거쳐 결정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br>－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br>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br>의결에 따라 결정                                                                                                                  |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br>(제59조의2제1항)                                   | －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자<br>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인<br>또는 심판청구인                                            | ○지원대상 확대<br>－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자에<br>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추가                                                                                                                                |
| <b>금전제재 정비</b>                                                 |                                                                                        |                                                                                                                                                                              |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br>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br>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br>(제48조제2항) |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br>· 6개월 이내 : 50% 감면<br>·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br>· 1년~2년 이내 : 10% 감면 | ○감면율 조정<br>－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br>· 1개월 이내 : 90% 감면<br>· 1~3개월 이내 : 75% 감면<br>· 3~6개월 이내 : 50% 감면<br>·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br>· 1년~1년6개월 이내 : 20% 감면<br>· 1년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                                                                | － 기한후신고법정신고기한경과후<br>· 1개월 이내 : 50% 감면<br>· 1~6개월 이내 : 20% 감면                           | － 기한후신고법정신고기한경과후<br>· 1개월 이내 : 50% 감면<br>· 1~3개월 이내 : 30% 감면<br>· 3~6개월 이내 : 20% 감면                                                                                          |
| <b>조세제도 합리화 등</b>                                              |                                                                                        |                                                                                                                                                                              |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br>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br>(제45조의3제3항)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br>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 후 신고 허용<br>－ 기한 후 신고자 추가                                                                                                                                                 |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br>정비<br>(제21조제2항)                               | －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br>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가산세별로 각각 규정<br>－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br>: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때<br>－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br>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br>그날이 경과한 때/납세고<br>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br>과하는 때 등                                           |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                                                                     |
|--------------------------------------|------|------------------------------------------------------------------------|
|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br>(제85조의6)     | (신설) | ○국세통계 자료 제공<br>－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 회기관에 국세통계 분석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전환 국립대학법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br>(제13조제8항) | (신설) | ○납세의무 적용 특례<br>－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 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전 환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 립학교로 취급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중점 논의 사항

### (1)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

#### □ 개정세법 주요 내용(국세기본법 제64조)

- 주요내용: 심사청구의 결정을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함
- 개정취지: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시행일: 2020.1.1.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정부안                             | 개정                              |
|---------------|----------------------------------------|---------------------------------|---------------------------------|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 | 심사청구의 결정<br>－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 장이 결정 | 심사청구의 결정<br>－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심사청구의 결정<br>－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09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을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세수효과

- 세수효과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심사청구의 필요적 자문기관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익 개선 효과와 국세청 심사체계의 투명성 강화방안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공감
  - ‘청’단위 행정체계 상 맞지 않는 의사결정방식이고, 청장이 명백한 사실이 있지 않는 이상 위법·부당한 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청장에게 최종결정권 부여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2)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 주요내용: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높이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여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신고 유도
- 개정취지: 신고납세자의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 시 행 일: 2020.1.1.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의 가산세 감면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정부안                                                                                                                                     | 개정                                                                               |
|------------|-----------------------------------------------------------------------------------|-----------------------------------------------------------------------------------------------------------------------------------------|----------------------------------------------------------------------------------|
| 수정<br>신고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br>· 6개월 이내 : 50% 감면<br>·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br>· 1년~2년 이내 : 1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br>· 3개월 이내 : 75% 감면<br>· 3~6개월 이내 : 50% 감면<br>·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br>·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br>·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 1개월 이내 90% 감면<br>구간 추가                                                         |
| 기한<br>후 신고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br>· 1개월 이내 : 50% 감면<br>· 1~6개월 이내 : 2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br>· 1개월 이내 : 50% 감면<br>· 1~3개월 이내 : 30% 감면<br>· 3~6개월 이내 : 2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br>· 1개월 이내 : 50% 감면<br>· 1~3개월 이내 : 30% 감면<br>· 3~6개월 이내 : 20% 감면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06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도입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 가산세 감면
- 2008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세분화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20%,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10%
- 2010년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세분화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 □ 세수효과

- (2020년) △60억원 (연평균) △60억원 (2020~2023년) △300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높이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여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
- 다만, 수정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 90% 감면구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 (3)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 □ 개정세법 주요 내용(국세기본법 제13조제8항)

-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을 「국세기본법」 상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
- 개정취지: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기 위함
- 시 행 일: 2020.1.1.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김정우의원안                                 | 개정                                     |
|--------------------------|------|----------------------------------------|----------------------------------------|
| 국세기본법상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와 동일 취급 | (신설) |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 전환 전 세법상 지위 |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 전환 전 세법상 지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개정 연혁

- 관련 개정 없음

□ 세수효과

- 세수효과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서 전환 전 세법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
- 다만, 다른 공익법인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하고,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다른 유사한 법인에 대해 동 사례를 근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도록 부대의견을 채택

## 2. 소득세

### 가. 총괄

-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소득세법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 연장,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하여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간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개정 등이 이루어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
  - 문화생활 지원 목적의 공제대상(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신문 구독비 추가
-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을 허용하고,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 : 현행\* +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금액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현행\* +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300~400만원
- 고용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처음 3년간 소득세의 70%, 이후 2년간 50% 감면(현행 5년간 50%)하고, 적용기한 연장(2022.12.31)

- 과학기술관련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5년간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신설
-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축소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의 한도를 설정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법시행 이후 적립분 부터 적용)
- 이 외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등에 대한 개정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금액을 확대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던 방식에서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도록 과세체계 개편

## 소득세 개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세율 및 과세대상 조정</b>                                           |                                                |                                                                                                                                   |
| -                                                             | -                                              | -                                                                                                                                 |
| <b>서민·중산층 세제지원</b>                                            |                                                |                                                                                                                                   |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확대<br>(소법 제12조제2호사목)                               | (신설)                                           | <b>○비과세 대상 확대</b><br>- 어로어업 소득                                                                                                    |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br>(조특법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7제3항)                | 최소지급액: 점중 및 점감 구간 3만원                          | <b>○최소지급액 인상</b><br>- 점중구간 10만원<br>- 점감구간 3만원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정<br>(조특법 제100조의3제5항)                             | - 배우자: 현재 배우자<br>- 홀벌이가구: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b>○배우자 판정기준 명확화</b><br>- 가족관계등록부 기준<br><b>○홀벌이가구 범위 확대</b><b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및 추가공제 신설<br>(조특법 제126조의2)          | (적용기한) 2019.12.31.                             | <b>○일몰 3년 연장</b><br>(적용기한) 2022.12.31.                                                                                            |
|                                                               | (신설)                                           | <b>○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 공제 추가</b><br>-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문 구독비용<br>-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적용<br>* 2021년부터 적용          |
| <b>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 등</b>                                         |                                                |                                                                                                                                   |
|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br>(소법 제59조의3제3항, 제4항) |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br>- 공제한도: 연금저축 연 300~400만원 | <b>○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및 공제한도 확대</b><br>-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전부 또는 일부)<br>- 공제한도: 연금저축 연300~400만원+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br>한도 확대<br>(조특법 제86조의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종합소득자</li> <li>-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br/>납입액 연 400만원, 퇴직<br/>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br/>시 연 700만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대상 납입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50세 이상 종합소득<br/>자(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li> <li>-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br/>저축계좌 납입액 600만<br/>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br/>과 합산시 연 900만원<br/>(적용기한) 2022.12.31.</li> </ul> </li> </ul>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br>소득공제 일몰 연장<br>(조특법 제87조제2항)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br>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br>(조특법 제88조의2제1항)     | (적용기한) 2019.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1년 연장<br/>(적용기한) 2020.12.31.</li> <li>◦소득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br/>융소득 합계액이 1회 연간<br/>2천만원 초과자 제외</li> </ul> </li> </ul>                                                    |
| <b>세입기반 확충</b>                                     |                                                                                                                                          |                                                                                                                                                                                                                                                                |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축소<br>(소법 제22조제3항)                   | -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br>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br>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                                                                                           | ◦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br/>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br/>한 기준금액의 2배</li> </ul>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br>(소법 제47조제1항)                       | (신설)                                                                                                                                     | ◦공제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천만원</li> </ul>                                                                                                                                                                                              |
| <b>투자활성화·고용지원</b>                                  |                                                                                                                                          |                                                                                                                                                                                                                                                                |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br>과세특례 대상 확대<br>(조특법 제14조제1항)      | (신설)                                                                                                                                     | ◦과세특례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 펀딩으로 취득한<br/>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br/>소득세 비과세</li> </ul>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br>사이익 비과세 특례 확대<br>(조특법 제16조의2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li> <li>- 한도: 연간 2천만원</li> </ul><br>(적용기한) 2020.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및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코넥스상장 벤처기<br/>업 추가</li> <li>- 한도: 연간 3천만원</li> </ul> </li> <li>◦일몰 1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li> </ul>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br>(조특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 (적용기한) 제한 없음                                 | ○적용기한 신설<br>- (적용기한) 2021.12.31.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br>(조특법 제18조)                                                | - 감면율: 50%<br><br>(적용기한) 2021.12.31.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br>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br>확대<br>- 3년간 70%, 이후 2년간 50%<br>- 기타 외국인기술자: 50%<br>○적용기한 1년 연장<br>-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br>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감면<br>(적용기한) 2022.12.31. |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br>(조특법 제18조의3)                                    | (신설)                                         | ○신설<br>- 대상: 국외 5년 이상 거주한<br>연구기술개발 우수인력이<br>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br>- 감면율: 5년간 50%<br>(적용기한) 2022.12.31.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br>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br>감면요건 완화<br>(조특법 제29조의6제1항)                    |                                              | ○감면요건 완화<br>- 내일채움공제의 소득세 감<br>면 적용을 위한 납입기간<br>요건 판정 시 청년내일채움<br>공제 납입기간 합산                                                                              |
|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의<br>양도소득세 과세이연<br>(조특법 제46조의7제1항)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br>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br>득세 과세 이연 | ○대상 확대<br>-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추가                                                                                                                                |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br>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br>한 과세특례 신설<br>(조특법 제87조의7)                     | (신설)                                         | ○신설<br>- 대상: 공모부동산집합투<br>자기구 투자금액 중 5천<br>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br>배당소득<br>- 세율: 9% 분리과세<br>(적용기한) 2021.12.31.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과세체계 합리화</b>                                                                |                                                                                                                                     |                                                                                                                                                                                                                                                                                         |
|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 범위 확대 및 세액계산 특례 신설<br>(소법 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제73조제1항제8호, 제64조의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위약금·배상금, 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li> </ul> <p>(신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분리과세대상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인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추가</li> </ul> </li> <li>○ <b>세액계산특례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약금·배상금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결정세액: 해당 기타소득의 20%</li> </ul> </li> </ul> |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및 침해대가에 대한 과세 명확화<br>(소법 제119조제10호, 제119조제12호, 제15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대가 및 침해대가에 대한 과세 규정 모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법미비 보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등의 사용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li> <li>-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침해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li> </ul> </li> </ul>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율 축소 및 일몰연장<br>(조특법 제96조제1항)                             | <p>(감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4년이상: 30%</li> <li>- 임대기간 8년이상: 75%</li> </ul> <p>(적용기한) 2019.12.3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액감면율 축소</b><br/>(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4년이상: 20%</li> <li>- 임대기간 8년이상: 50%</li> </ul> </li> <li>* 2021년부터 적용</li> <li>○ <b>일몰 3년 연장</b><br/>(적용기한) 2022.12.31.</li> </ul>                           |
| <b>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과세체계 변경</b>                                                     |                                                                                                                                     |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위한 양도소득의 범위 조정<br>(소법 제94조제1항)                         | <p>(범위) 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건물</li> <li>- 부동산에 대한 권리</li> <li>- 주식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 범위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 발행 또는 외국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 추가</li> </ul> </li> </ul>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국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축소<br>(소법 제118조의7)                            | (기본공제)<br>- 국외에 있는 자산 양도소득의 자산별(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주식등) 각각 연 250만원                                                                                                                   | ○국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폐지<br>- 국외 자산 양도소득 연 250만원                                                                                                                                                        |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br>(소법 제104조제4항제3호) | (신설)                                                                                                                                                                               | ○중과 제외 단서 신설<br>-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시 중과 제외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br>(조특법 제77조의2)                        | (감면율)<br>- 양도소득세액의 15%                                                                                                                                                             | ○감면율 인상<br>- 양도소득세액의 40%                                                                                                                                                                          |
| 기타                                                           |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br>(조특법 제85조의7)           | (과세특례)<br>- 내국법인: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br>- 거주자: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 과세특례 확대<br>- 내국법인: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산입<br>- 거주자: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완화<br>(조특법 제85조의7제1항, 제85조의8제1항)    | (적용요건)<br>-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br>-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br>(과세특례)<br>-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2년 거치 2년 익금 산입<br>-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 ○ 적용요건 완화<br>(적용요건)<br>-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br>-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br>○ 과세특례 확대<br>-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익금 산입<br>-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주: ( )의 '소법'은 「소득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중점 논의 사항

### (1)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소득세법 제12조제1항 등)

- 주요내용: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및 비과세 확대
  -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어로소득금액 5천만원으로 비과세 수준을 결정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개정취지: 농민과 어민간의 세부담 형평성 강화
- 시 행 일: 2020.1.1.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윤영일의원안                                            | 김정호의원안                                                                      |
|-------------|-------------------------------------------------------------------|---------------------------------------------------|-----------------------------------------------------------------------------|
|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 및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금액과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주요 내용       | 황주홍의원안                                                            | 김성찬의원안                                            | 개정                                                                          |
|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주: 어로어업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에 원양어업과 해면어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연 3천만원으로 증가

\* 농어가부업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어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농가소득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여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마련한 정부대안 채택
- 농·어가 및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과 비과세 적용 기준 및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정부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면세점 3천만원)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다수의원이 농·어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 4개의 의원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기준에 ‘수입’과 ‘소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용어 통일 및 적절 비과세 수준 마련 요구
- 농·어가 비과세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가 어로어업소득 비과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합의하고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정부는 고령화 등 어업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로어업소득 비과세의 적정 수준(소득금액 5천만원 상당)을 결정하고 향후 법령개정에 반영할 것

##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소득세법 제47조제1항)

- 주요내용: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2천만원의 한도를 설정
- 개정취지: 근로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시행일: 2020.1.1.

근로소득공제 한도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만원)

| 주요 내용    | 현행   | 정부안   | 개정    |
|----------|------|-------|-------|
| 근로소득공제한도 | (신설) | 2,000 | 2,0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0년 이후 2차례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근로소득공제율 연혁

(단위: %)

| 2010~2011 |     | 2012~2013 |     | 2014~현재  |     |
|-----------|-----|-----------|-----|----------|-----|
| 총급여액      | 공제율 | 총급여액      | 공제율 | 총급여액     | 공제율 |
| ~500만원    | 80  | ~500만원    | 80  | ~500만원   | 70  |
| ~1,500만원  | 50  | ~1,500만원  | 50  | ~1,500만원 | 40  |
| ~3,000만원  | 15  | ~3,000만원  | 15  | ~4,500만원 | 15  |
| ~4,500만원  | 10  | ~4,500만원  | 10  | ~1억원     | 5   |
| ~8,000만원  | 5   | 4,500만원~  | 5   | 1억원~     | 2   |
| ~1억원      | 3   | —         | —   | —        | —   |
| 1억원~      | 1   | —         |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647억원 (연평균) 754억원 (2020~2024년) 3,772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일부 고소득층에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원안대로 통과
  - 소득 상위 0.1% 근로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접근을 해야 한다는 비판 제기
  - 정부는 세무행정이 발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파악이 수월해졌음을 고려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에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해야한다는 입장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소득세법 제59조의3)

- 주요내용: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ISA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 개정취지: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 시 행 일: 2020.1.1.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정부안                                                   | 개정                                                    |
|-----------------|------------------------------|-------------------------------------------------------|-------------------------------------------------------|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간 1,800만원                   | 연간 1,800만원 +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금액                        | 연간 1,800만원 +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금액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 <sup>1)</sup> | 연금저축 300~4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 추가납입 방법         | —                            |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

주: 1)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
  - － 납입금액의 12% 공제, 납입한도 400만원
- 2015년부터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에 대하여 공제율 상향(15%), 연금계좌별 한도 적용
  - －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시 700만원
- 2017년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 － 퇴직연금계좌와 합산시 납입한도 700만원 유지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1년) △99억원 (연평균) △140억원 (2021~2024년) △560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세액공제의 역진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노후대비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원안대로 통과

#### (4)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 주요내용: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
- 개정취지: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있고 연금부담 여력이 높은 50세 이상 거주자에게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 유도
- 시 행 일: 2020.1.1.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설안 및 신설내용 비교<sup>1)</sup>

| 주요 내용             | 현행   | 정성호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 적용대상자             | (신설) | 종합소득이 있는<br>50세 이상<br>거주자        | 종합소득이<br>있으며 금융소득<br>합계액이<br>2천만원을<br>초과하지 않는<br>50세 이상<br>거주자 | 종합소득이<br>있으며 금융소득<br>합계액이<br>2천만원을<br>초과하지 않는<br>50세 이상<br>거주자 |
| 연금 저축계좌<br>납입한도   |      | 연 1,200만원                        | 연 600만원                                                        | 연 600만원                                                        |
|                   |      | 연 1,200만원<br>(소득수준에<br>따른 차등 없음) | 종합소득금액<br>1억원 초과자는<br>연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br>1억원 초과자는<br>연 300만원                                  |
| 퇴직연금계좌<br>합산 납입한도 |      | 연 1,500만원                        | 연 900만원                                                        | 연 900만원                                                        |
|                   |      | 연 1,500만원<br>(소득수준에<br>따른 차등 없음) | 종합소득금액<br>1억원 초과자는<br>연 700만원                                  | 종합소득금액<br>1억원 초과자는<br>연 700만원                                  |
| 일몰기한              |      | —                                | 2022.12.31                                                     | 2022.12.31                                                     |

주: 1)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4) 신설을 통해 소득세법(제59조의 3)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176억원 (연평균) △277억원 (2020~2023년) △831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납입한도와 대상 연령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안대로 통과
-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및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짐
  - － 의원안과 정부안을 절충하여 소득조건을 설정하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였으나, 정부는 현재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sup>13)</sup>을 고려하면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해당될

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90%를 차지하고 있음

것이라는 입장

- 또한 대상 연령인 50세를 더 낮추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크고 연금부담 여력이 있는 50세 이상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제도 활용 가능 연령대를 고려하였다는 입장
- 이에 대해 추후 연령대를 낮추어 제도의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 (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 주요내용: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
- 개정취지: 공익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및 공익사업 지원
- 시 행 일: 2020.1.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안 및 개정내용

| 주요 내용               | 현행                                                                                                                   | 이현재의원안      | 김경협의원안                                                     |
|---------------------|----------------------------------------------------------------------------------------------------------------------|-------------|------------------------------------------------------------|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 양도대금 인 대토보상</li> </ul>          | 현행          | 현행                                                         |
| 감면·과세이연한 양도 소득세의 추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li> <li>-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li> </ul> | 현행          | 단서신설<br>(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 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정 제외) |
| 양도소득세 감면율           | 15%                                                                                                                  | 90%         | 80%                                                        |
| 적용기한                | 2021.12.31.                                                                                                          | 2021.12.31. | 2021.12.31.                                                |

| 주요 내용                  | 김영우의원안                                                                                                           | 김한정의원안                             | 이연주의원안                             |
|------------------------|------------------------------------------------------------------------------------------------------------------|------------------------------------|------------------------------------|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br>감면·이연 대상 | 대토보상 양도소득<br>세 감면대상 유지,<br>이연제도 폐지                                                                               | 대토보상 양도소득<br>세 감면대상 유지,<br>이연제도 폐지 | 대토보상 양도소득<br>세 감면대상 유지,<br>이연제도 폐지 |
| 감면·과세이연한 양도<br>소득세의 추징 | 해당 제도 폐지                                                                                                         | 해당 제도 폐지                           | 과세이연은 제외                           |
| 양도소득세 감면율              | 100%                                                                                                             | 100%                               | 100%                               |
| 적용기한                   | 삭제                                                                                                               | 삭제                                 | 2021.12.31.                        |
| 주요 내용                  | 개정                                                                                                               |                                    |                                    |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br>감면·이연 대상 | 현행                                                                                                               |                                    |                                    |
| 감면·과세이연한 양도<br>소득세의 추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li> <li>- 대토보상권을 부동산 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li> </ul> |                                    |                                    |
| 양도소득세 감면율              | 40%                                                                                                              |                                    |                                    |
| 적용기한                   | 2021.12.31.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07년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허용, 이후 일몰 4회 연장
- 2015년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 또는 과세 이연 적용
- 2016년 양도소득세 감면율 15%로 인하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37억원 (연평균) △37억원 (2020~2021년) △73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공익사업용 토지 및 대토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원안이 제안되었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만 인상(15%→40%)

-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였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합의된 적정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요구
  - 보상금액이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대토보상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어 유동성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감면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토보상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인상(15%→40%)하는 것으로 합의

####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신문 구독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개정취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 시 행 일: 2020.1.1.(단, 신문 구독비용 추가공제는 2021.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공제율 조정에 대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김광림의원안                                   | 추경호의원안                                   |
|--------------|-----------------------------------------------------------------------------------------------------------------|------------------------------------------|------------------------------------------|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 - 전통시장사용분 40%<br>- 대중교통이용분: 40%<br>-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br>- 직불카드등사용분: 30%<br>- 신용카드사용분: 15%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추가공제 대상에 신문 등 구독·구입비 포함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추가공제 대상에 신문 등 구독·구입비 포함 |
| 추가공제 한도      | - 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br>- 대중교통이용분 100만원<br>-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100만원                                                  | 도서·신문등·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100만원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120만원                |

| 주요 내용        | 신창현의원안                        | 정성호의원안                   | 홍철호의원안                                                                      |
|--------------|-------------------------------|--------------------------|-----------------------------------------------------------------------------|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 자전거구입분 40%                    | 지방자치단체상품권등 사용분 40%       | 대중교통이용분(여객운송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 이용료 포함): 40%                                       |
| 추가공제 한도      | 자전거구입분 100만원 추가               | 지방자치단체상품권 등 사용분 100만원 추가 | 현행                                                                          |
| 주요 내용        | 정갑윤의원안                        | 이원욱의원안                   | 박맹우의원안                                                                      |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 전통시장사용분 50%<br>대중교통이용분 50%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이용분 40%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 추가공제 적용시 결제수단별 공제율 상향                                        |
| 추가공제 한도      | 현행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이용분 100만원 추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40%<br>-직불카드등 사용분: 40%<br>-신용카드 사용분: 20% |
| 주요 내용        | 정부안                           |                          | 개정                                                                          |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이용분: 4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추가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 포함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 금액 100만원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100만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유승희의원안                 | 추경호·윤후덕·<br>신창현의원안     |
|-------|------------------------|------------------------|------------------------|
| 일몰기한  | 2019.12.31.            | 2020.12.31.<br>(1년 연장) | 2022.12.31.<br>(3년 연장) |
| 주요 내용 | 정갑윤의원안                 | 최교일·오제세·<br>홍철호의원안     | 김경협·김선동의원안             |
| 일몰기한  | 2023.12.31.<br>(4년 연장) | 2024.12.31.<br>(5년 연장) | 폐지(영구화)                |
| 주요 내용 | 정부안                    | 개정                     |                        |
| 일몰기한  | 2022.12.31.<br>(3년 연장) | 2022.12.31.<br>(3년 연장)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1999년 도입 이후 약 20년 동안 7회 일몰 연장
-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3년 대중교통 이용유도 목적으로 대중교통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4년 소비심리 개선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추가('16.6월 사용분까지만 적용)
- 2018년 문화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공연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9년 문화생활 지원 목적의 공제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기준선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한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신문 구독비 소득공제: (2021년) △19억원 (연평균)△19억원  
(2021~2022년) △39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등에 대한 공제율 인상, 추가공제 신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원안

및 정부안이 제안되었으며, 일몰 연장 및 신문 구독료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에 합의

- 일몰연장은 既합의한 사항이므로 정부안 채택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의 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신설안 중 신문 구독료에 대해 주로 논의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 직불카드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현재 이용실적이 부진한 점, 중앙정부 지원의 적정성이 미흡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함
  -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강조
  - 그러나, 직불카드와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 소상공인 사업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
  - 또한 초기 시스템도입 및 가맹점 확대를 위해 투입한 비용 대비 현재 이용금액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할 것을 제안
- 신문 구독료에 대한 추가공제는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사항이므로 입법을 추진하되, 현재 인프라 구축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 이후 결제시스템이 구축된 곳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함
  - 2018년 조세소위 기논의한 사항으로 “정부는 판매처 등록 및 결제시스템 구축 등 공제 적용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신문 등 구독비용에 대해 공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
  - 따라서 문화생활 지원 목적의 공제대상(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신문 구독비를 추가하되, 인프라 구축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 결제시스템이 구축된 곳부터 소득공제를 적용

### 3. 법인세

#### 가. 총괄

- 일본 수출규제 및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 여건을 반영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정부안의 1년 한시 상향에서 중소·중견기업 공제율은 2년 상향, 대기업은 1년 한시 상향하도록 개정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공제율 수준을 축소하는 정부안 대비 현행 공제율 수준을 유지하고 오락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안으로 합의
  -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또한 적용대상 시설투자비에 공사비를 추가하는 의원안 반영 대안으로 최종 개정
- 기업의 접대비 지출 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
  - 이와 함께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를 상향(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0.3%, 100억~500억원 0.1%→0.2%)
- 법인세율 및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안은 작년에 이어 조세소위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찬성 입장: 경제활성화 및 기업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필요, 현재 법인세의 과표구간이 과다하여 조세효율성이 저하될 우려
  - 반대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세율 체계 유지 필요, 법인세율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하며, 세수감소 우려
- 이외 중소기업 및 고용 지원, 지역경쟁력 강화 관련 개정안이 의원안을 중심으로 발의되어 심도 있게 논의
  -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경력단절 기간 10년→15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의원안) 및 일몰종료를 명시하는 부대의견 채택(1년 연장 후 종료)

### 법인세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세율 및 과세대상 조정</b>                         |                                                                                                                                                        |                                                                       |
| -                                           | -                                                                                                                                                      | -                                                                     |
| <b>투자활성화 지원</b>                             |                                                                                                                                                        |                                                                       |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br>투자세액공제율 상향<br>(조특법 제5조)   | (공제율)<br>- 중소기업 3%<br>- 중견기업 1~2%                                                                                                                      | ○공제율 상향<br>(공제율)<br>- 중소기업 10%<br>- 중견기업 3~5%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br>제 공제율 상향<br>(조특법 제25조)     | (공제율)<br>- 대기업 1%<br>- 중견기업 3%<br>- 중소기업 7%                                                                                                            | ○공제율 상향<br>(공제율)<br>- 대기업 2%(1년 한시)<br>- 중견기업 5%<br>- 중소기업 10%        |
|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br>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br>(조특법 제25조)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2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                                       |
|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세액공<br>제 적용기한 연장<br>(조특법 제25조의4)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2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                                       |
| 5G 이동통신 시설투자<br>세액공제 확대<br>(조특법 제25조의7)     | (공제대상)<br>- 시설투자비(시설매입액 한정)                                                                                                                            | ○공제대상 확대<br>(공제대상)<br>- 현행+공사비(시행령 개정)                                |
| 가속상각특례 연장<br>(조특법 제28조의3)                   | (대상)<br>○중소·중견<br>- 대상 : 사업용고정자산<br>- 상각률 : 내용연수 ±75%<br>○대기업:<br>- 대상 : 혁신성장투자자산<br>+ 생산성향상시설<br>+ 에너지절약시설<br>- 상각률 : 내용연수 ±50%<br>(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6개월 연장<br><br><br><br><br><br><br>(적용기한) 2020.6.30.<br>- 시행령 개정사항 |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                                                                                                                                      |
|----------------------------------------------------------------------|-------------------------------------------------------------------|-----------------------------------------------------------------------------------------------------------------------------------------|
| <b>혁신성장 지원</b>                                                       |                                                                   |                                                                                                                                         |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br>범위 확대<br>(조특법 제10조)                              | (대상)<br>- 서비스 R&D: 자체비용 한정                                        | ○대상 확대<br>(대상)<br>- 자체비용+위탁·공동 R&D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br>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br>(조특법 제25조의6)                     | (대상)<br>- 다큐(한국 관련), 드라마,<br>애니메이션<br><br>(적용기한) 2019.12.31.      | ○대상 확대<br>(대상)<br>- 다큐(전체), 드라마, 애니메<br>이션, 오락<br><br>○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br>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br>(조특법 제144조)                       | (이월공제 기간)<br>- 일반 : 5년<br>- 창업초기 중소기업: 7~10년                      | ○이월공제기간 확대<br>(이월공제 기간)<br>- 일반 : 5년<br>- 창업초기 중소기업: 7~10년<br>- 신성장원천기술 R&D: 10년                                                        |
| <b>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b>                                            |                                                                   |                                                                                                                                         |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br>전문기업 등 공동출자시<br>세액공제 신설<br>(조특법 제13조의3제1항,<br>제2항) | (신설)                                                              | ○신설<br>(대상)<br>-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br>비전문기업 등 공동출자 및<br>공동인수<br>(공제율)<br>- 주식취득가액 5%<br>- 출자지분가액 5%<br>(중견 7%,중소 10%)<br>(적용기한) 2022.12.31. |
| <b>중소기업 지원</b>                                                       |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br>적용 업종 확대<br>(조특법 제6조)                                 | (대상업종)<br>-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br>점업, 연구개발업, 광고업,<br>통신판매업 등 31개 업종 | ○ 서비스업종 등 추가<br>(대상업종)<br>- 수도업, 환경정화 및 복원<br>업, 회사 본부 및 경영컨설<br>팅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br>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br>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br>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                                                                                                                       |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제8조의3제1항) | (대상)<br>-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br><br>(적용기한) 2019.12.31.  | ○대상 확대<br>(대상)<br>-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br>-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br>○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 <b>고용지원</b>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 (조특법 제29조의3)                | (적용 요건)<br>- 사유: 임신·출산·육아<br>- 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br>- 해당기업에 재취업 | ○적용 요건 완화<br>(적용 요건)<br>- 사유: 임신·출산·육아· <u>결혼·자녀교육</u><br>- 기간: 3년 이상 <u>15년 미만</u><br>- <u>동종업종</u>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0조의2)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1년 연장<br>(적용기한) 2020.12.31.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30조의4)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1년 연장<br>(적용기한) 2020.12.31.                                                                                          |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감면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의6)         | (공제율)<br>-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br><br>(적용기한) 2019.12.31.   | ○감면 한도 신설<br>(공제율)<br>-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br>- (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br>○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 <b>지역경제 활성화</b>                                           |                                                                |                                                                                                                          |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 등 (조특법 제99조의9)                          | (공제율)<br>- 5년간 100%<br><br>(최저한세 적용 유무)<br>- 적용제외              | ○공제율 확대<br>(공제율)<br>- 5년간 100%, <u>이후 2년 50%</u><br>○최저한세 정비<br>(최저한세 적용 유무)<br>- 적용: 50% 감면기간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br>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br>(조특법 제121조의22 )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2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                                                                                   |
| 지역특구 지원세제<br>최저한세 정비<br>(조특법 제132조)                      | (최저한세 적용 유무)<br>- 적용제외: 금융중심지 창업<br>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br>입주기업 등<br>- 적용: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br>단기술기업, 첨단의료복합<br>단지 입주기업 | ○최저한세 정비<br>(최저한세 적용 유무)<br>- 적용제외: 특구별 100% 감면<br>적용기간<br>- 적용: 특구별 50% 감면기간                                     |
| <b>기타</b>                                                |                                                                                                              |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br>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br>(조특법 제13조의2)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상향<br>(법인법 제25조)                              | (기본한도)<br>- 일반기업 1,200만원<br>- 중소기업 2,400만원<br>(수입금액별 한도)<br>- 100억원 이하: 0.2%<br>- 100억원~500억원 이하 0.1%        | ○한도 상향<br>(기본한도)<br>- 일반기업 1,200만원<br>- 중소기업 3,600만원<br>(수입금액별 한도)<br>- 100억원 이하 0.3%<br>- 100억원~500억원 이하 0.2%    |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br>및 침해대가에 대한 과세<br>명확화<br>(법법 제93조제8호 등) |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br>대한 사용대가 및 침해대<br>가는 과세 규정 모호                                                              | ○입법미비 보완<br>-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는 ‘기<br>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br>등의 사용료’에 포함되는<br>것으로 간주<br>-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침해<br>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 |
|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br>연장<br>(조특법 제104조의10)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5년 연장<br>(적용기한) 2024.12.31.                                                                                   |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br>세액공제 축소 및 적용기한<br>연장<br>(조특법 제104조의25) | (공제 대상 및 공제율)<br>- 공급자: 0.1%<br>- 공급받는자: 0.2%<br><br>(적용기한) 2019.12.31. | ○공제 대상 축소<br>(공제 대상 및 공제율)<br>- 삭제<br>- 공급받는자: 0.2%<br><br>○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주: ( )의 '법법'은 「법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중점 논의 사항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정비 및 일몰연장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주요내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 개정취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의욕 고취
- 시행일: 2020.1.1.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이원욱의원안                  | 추경호의원안                                               | 김두관의원안                             | 김상훈의원안<br>오제세의의원안                  |
|-------|-------------------------|-------------------------|------------------------------------------------------|------------------------------------|------------------------------------|
| 공제율   | 대 1%<br>중견 3%<br>중소 7%  | 현행                      | 대 3%<br>중견 5%<br>중소 10%                              | 현행                                 | 현행                                 |
| 일몰기한  | 2019.12.31.             | 2022.12.31.             | 2022.12.31.                                          | 2020.12.31.                        | 2024.12.31.                        |
| 주요 내용 | 송갑석의원안                  | 심재철의원안                  | 윤후덕의원안                                               | 정부안<br>김정우의원안                      | 개정                                 |
| 공제율   | 대 1%<br>중견 3%<br>중소 10% | 대 3%<br>중견 7%<br>중소 10% | 대 2%<br>중견 5%<br>중소 10%<br>(대기업은<br>고용에 따라<br>최대 3%) | 대 2%<br>중견 5%<br>중소 10%<br>(1년 한시) | 대 2%<br>(1년 한시)<br>중견 5%<br>중소 10% |
| 일몰기한  | 2022.12.31.             | 2022.12.31.             | 2022.12.31.                                          | 2021.12.31.                        | 2021.12.3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기업에 중견기업(5%) 추가
- 2018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축소, 적용기한 1년 연장
  - － 공제율 축소: 대기업 3% → 1%, 중견기업 5% → 3%
  - － 적용기한 연장: 2018.12.31. → 2019.12.31.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558억원 (연평균) △1,932억원 (2020~2022년) △5,759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민간 투자욕 고취를 위한 제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수준을 두고 입장차 존재
  - － 최근 경기침체 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의 공제율 환원 및 적용기한 연장 의견
  -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의견
  - － 정부는 단순 물적투자보다 혁신성장 등 높은 외부효과 투자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대기업 공제율은 축소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견
- 조세소위 논의 결과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상향하되, 대기업 공제율 상향은 1년 한시 적용하는 대안으로 합의

###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6조)

-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오락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개정취지: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 시 행 일: 2020.1.1.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이동섭의원안                                                | 추경호의원안                                                |
|-------|---------------------------------------------------------|-------------------------------------------------------|-------------------------------------------------------|
| 공제율   | 대 3%<br>중견 7%<br>중소 10%                                 | 현행                                                    | 현행                                                    |
| 공제대상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br>방송 프로그램(드라마,<br>애니메이션, 한국 관련<br>다큐멘터리) 영화 | 법률로 규정한 방송프<br>로그램(드라마, 애니메<br>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br>락) 영화 | 법률로 규정한 방송프<br>로그램(드라마, 애니메<br>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br>락) 영화 |
| 일몰기한  | 2019.12.31.                                             | 2022.12.31.                                           | 2021.12.31.                                           |
| 주요 내용 | 신동근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공제율   | 현행                                                      | 대 1% 중견 3%<br>중소 7%                                   | 현행                                                    |
| 공제대상  | 현행                                                      | 현행                                                    | 법률로 규정한 방송프<br>로그램(드라마, 애니메<br>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br>락) 영화 |
| 일몰기한  | 2024.12.31.                                             | 2022.12.31.                                           | 2022.12.3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신설, 2017년부터 시행(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48억원 (연평균) △366억원 (2020~2023년) △1,463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와 의 형평성을 감안한 공제율 축소 입장(정부안)과 최근 국내 오락 프로그램 수출 확대에 따른 지원 확대안(의원안)이 다수 발의되어 논의
  - － 의원안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투자 및 수출확대,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예상되므로 오락 프로그램 등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
  - － 정부는 여타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수준과의 통일 필요성 및 정부 지원 대상으로서 오락물의 적정성이 낮아 지원 확대가 곤란하다는 입장

- 한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의 범위는 조세특례 핵심사업이므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
- 적용대상은 다큐멘터리 전체 및 오락물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며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는 대안으로 합의

### (3)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7조)

- 주요내용: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개정취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신속투자 유도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시 행 일: 2020.1.1.

5G 시설투자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이원욱의원안                                             | 이철희의원안                                                       |
|-------|------------------------------------------------|----------------------------------------------------|--------------------------------------------------------------|
| 공제대상  | - 지역: 수도권과밀억<br>제권역 외<br>- 대상: 기지국 시설 매<br>입가액 | - 현행+ 수도권과밀억<br>제권역내 포함<br>- 현행+기타 부대비용<br>(설치비 등) | - 현행+ 수도권과밀억<br>제권역내 포함<br>- 현행+기타 부대비용<br>(설치비 등)           |
| 공제율   | 기본공제율 2%<br>+고용증가율(최대 3%)                      | 기본공제율 3%<br>+고용증가율(최대 4%)                          | 기본공제율 3%+고용<br>증가율(최대 4%)<br>단, 구내용 이동통신시설<br>비 설치시 1%p 가산공제 |
| 일몰기한  | 2020.12.31.                                    | 2021.12.31.                                        | 2021.12.31.                                                  |
| 주요 내용 | 윤후덕의원안                                         |                                                    | 개정                                                           |
| 공제대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br>- 기지국 시설투자비+공사비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br>- 기지국 시설투자비+공사비                          |
| 공제율   | 기본공제율 3%+고용증가율<br>(최대 4%)                      |                                                    | 기본공제율 2%<br>+고용증가율(최대 3%)                                    |
| 일몰기한  | 현행                                             |                                                    | 2020.12.31.                                                  |

주: 공제대상 투자비는 시행령으로 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8년 신설, 2019년부터 시행(적용기한 2020.12.31.)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38억원 (연평균) △189억원 (2020~2021년) △378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의원안 및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산업의 혁신성을 감안하여 지원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이나,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투자로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고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 이상 상향하는 개정안과 연계하여 동 제도 공제율의 상향을 주장
  - 소위 논의 중 현재 5G 투자가 3.5GHz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28GHz망<sup>14)</sup> 투자에 한정된 지원 확대 의견도 제기됨
- 조세소위 논의 결과 지원대상 지역은 현행(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을 유지하되 지원대상 투자비에 공사비를 추가할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합의

#### (4)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 □ 개정세법 주요 내용(법인세법 제25조)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만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 적용률 상향
- 개정취지: 기업 세부담 완화
  - 시 행 일: 2020.1.1.

14) 28GHz는 3.5GHz 대비 속도가 약 3배 빠르고 B2B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미국은 2019년 4월부터 일부지역에 28GHz 대역 등의 기지국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1분기까지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예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

| 주요 내용    | 현행                                          | 김병욱의원안                | 이종구의의원안                                     |
|----------|---------------------------------------------|-----------------------|---------------------------------------------|
| 기본한도     | 1,200만원<br>(중소기업 2,400만원)<br>× 사업연도의 개월수/12 | 현행                    | 현행                                          |
| 손금산입 적용률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          | 적용률                                         | 적용률                   | 적용률                                         |
|          | 100억원 이하 0.2                                | 100억원 이하 0.5          | 100억원 이하 1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
|          | 500억원 초과 0.03                               | 500억원 초과 0.06         | 500억원 초과 0.1                                |
| 주요 내용    | 최교일의의원안                                     | 정갑윤의원안                | 개정                                          |
| 기본한도     | 현행                                          | 현행                    | 1,200만원<br>(중소기업 3,600만원)<br>× 사업연도의 개월수/12 |
| 손금산입 적용률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          | 적용률                                         | 적용률                   | 적용률                                         |
|          | 100억원 이하 0.6                                | 100억원 이하 0.5          | 100억원 이하 0.3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
|          | 500억원 초과 0.1                                | 500억원 초과 0.05         | 500억원 초과 0.0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중소기업 기본한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1년) △1,777억원 (연평균) △1,777억원 (2021~2024년) △7,108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중소기업 기본공제액의 한도 상향과 함께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적용률을 상향하는 다수 의원안이 소위에서 논의됨
  - － 기업의 접대비 지출 확대를 견인하고, 이를 통해 음식점업 등의 매출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에 대한 방향성은 대부분 공감

- 다만,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과다해질 경우 오히려 기업가치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세수감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입장도 제기
-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손금산입 적용률을 0.2%에서 0.3%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손금산입 적용률을 0.1%에서 0.2%로 상향하는 대안에 합의

#### (5)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을 현행 경력단절 후 3~10년 이내 동종기업 재취업에서 경력단절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으로 완화
- 개정취지: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
- 시 행 일: 2020.1.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김철민의원안                 | 함진규의원안         | 조정식의원안                 |
|---------|-----------------------|------------------------|----------------|------------------------|
| 기업 요건   |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현행                     | 현행             | -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 퇴직사유    | - 임신·출산·육아            | - 결혼·임신·출산<br>·육아·자녀교육 | 현행             | - 결혼·임신·출산<br>·육아·자녀교육 |
| 경력단절 기간 | - 3년 이상 10년 미만        | 현행                     | - 3년 이상 16년 미만 | - 3년 이상 15년 미만         |
| 공제율     | - 인건비 30%<br>(중견 15%) | 현행                     | 현행             | 현행                     |
| 적용기한    | - 2020.12.31.         | 현행                     | 현행             | 현행                     |

| 주요 내용   | 정성호의원안                             | 김상훈의원안          | 김경협의원안                             | 최교일의의원안                       |
|---------|------------------------------------|-----------------|------------------------------------|-------------------------------|
| 기업 요건   | - 해당 기업 또는 동종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현행                            |
| 퇴직사유    | 현행                                 | 현행              |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 -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
| 경력단절 기간 | - 2년 이상 10년 미만                     | 현행              | 현행                                 | - 2년 이상 16년 미만                |
| 공제율     | 현행                                 | 현행              | - 인건비 40% (중견 20%)                 | 현행                            |
| 적용기한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 주요 내용   | 정부안                                |                 | 개정                                 |                               |
| 기업 요건   | - 해당 기업 또는 동종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 - 해당 기업 또는 동종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
| 퇴직사유    | - <u>결혼</u> ·임신·출산·육아· <u>자녀교육</u> |                 | - <u>결혼</u> ·임신·출산·육아· <u>자녀교육</u> |                               |
| 경력단절 기간 | - <u>3년 이상 15년 미만</u>              |                 | - <u>3년 이상 15년 미만</u>              |                               |
| 공제율     | 현행                                 |                 | - 인건비 30% (중견 15%)                 |                               |
| 적용기한    | 현행                                 |                 | - 2020.12.31.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신설
- 2016년 퇴직사유에 ‘임신’을 추가
- 2017년 경력단절기간을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
- 2018년 적용대상 기업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로 상향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1년) △128억원 (연평균) △128억원 (2021~2022년) △256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동 제도가 2014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2018년 조세지출실적이 0.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 활용이 부진한 상황
- 현행 세법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 중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 경력단절 기간 요건 등이 엄격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정부안에 여·야 모두 공감하며 정부안 합의

## (6)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3)

- 주요내용
  - －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신설
- 개정취지: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그에 수반되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 시 행 일: 2020.1.1.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박명재의원안                                                                                                                                                                                        | 홍일표의원안                                                                                                                                                                                          |
|----------------------|-------------------------------------------------------------------------------------------------------------------------------------------------------------------------------------|-----------------------------------------------------------------------------------------------------------------------------------------------------------------------------------------------|-------------------------------------------------------------------------------------------------------------------------------------------------------------------------------------------------|
| 외국법인<br>인수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u>사업·자산을 양수하는 경우</u></li> <li>- 세액공제율: 인수가액의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단, 인수가액이 5천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u>신성장동력·원천기술</u>)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u>사업·자산을 양수하는 경우</u></li> <li>- 세액공제율: 인수가액의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한도 없음)</li> </ul> |
| 소재·부품·장비 관련<br>기업 투자 |                                                                                                                                                                                     | —                                                                                                                                                                                             | —                                                                                                                                                                                               |
| 주요 내용                | 정부안                                                                                                                                                                                 |                                                                                                                                                                                               | 개정                                                                                                                                                                                              |
| 외국법인<br>인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li> <li>- 세액공제율: 인수가액의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단, 인수가액이 5천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제외)</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u>사업·자산을 양수하는 경우</u></li> <li>- 세액공제율: 인수가액의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단, 인수가액이 5천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제외)</li> </ul>   |
| 소재·부품·장비 관련<br>기업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내국법인(“투자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투자대상기업”)에 공동으로 출자</li> <li>- 세액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내국법인(“투자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투자대상기업”)에 공동으로 출자</li> <li>- 세액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li> </ul>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으로 정부안과 의원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데, 외국법인·출자 방법 확대, 공제대상 인수가액 한도 설정 등 주요 쟁점위주로 논의
  - － 정부안의 경우 외국법인 인수 방식을 주식 취득으로 한정하였으나, 의원안에서 제시된 사업·자산양수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하는 대안에 합의
  - －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출자 뿐만 아니라 단독출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관련 수요기업끼리 수평적 협력을 통해서 출자하는 새로운 모델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
- 그 외 외국법인 인수가액의 한도 미설정과 관련하여 인수가액이 큰 해외 M&A시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세수감소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개정

## 4. 소비세제

### 가. 총괄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6%p 인상하였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등 중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 지난 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1%에서 15%로 4%p 인상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6%p가 추가 인상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한시적 인상의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공제율 인하
    -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시적 인상 적용도 1년 연장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는 등 세율체계가 조정되었으며, 교통·유류 및 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방향으로 개정
  - 국산과 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 확보를 통한 국산 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해 각각 41,700원/kl, 830,300원/kl의 종량세로 전환
  - 주식 거래비용 인하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기존 0.5%에서 0.45%로 인하
    - 지난해 유가증권, 코스닥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인하하였고, 금번 기본세율 인하는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에 적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차령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감면이 노후 자동차로 확대되어 2020.1.~2020.6.까지 한시 적용
    -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2.12.31.까지 연장
  -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022년까지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75%(12,000원→3,000원) 감면

## 소비세제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세율, 과세대상 및 과세체계 변경</b>                                  |                                                              |                                                                                                                                                              |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조정<br>(부가세법 제72조제1항)                  | - 부가가치세 85%<br>- 지방소비세 15%                                   | ○이양비율 인상<br>- 부가가치세 79%<br>- 지방소비세 21%                                                                                                                       |
|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 전환<br>(주세법 제22조)                              | - 탁주·맥주: 출고가<br>격 또는 수입신고<br>가격<br><br>- 탁주: 5%<br>- 맥주: 72% | ○과세표준 변경<br>- 탁주·맥주: 출고수량 또는<br>수입신고수량<br><br>○세율<br>- 탁주: 41,700원/kl<br>- 맥주: 830,300원/kl<br>(생맥주 2021년 말까지<br>664,200원/kl)<br>○탁주·맥주 세율 매년 소비<br>자물가상승률 반영 |
| 주류의 범위 확대 및 무면허 주류<br>제조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br>(주세법 제3조제1호나목·제6조) | 주류: 알코올 1도<br>이상의 음료                                         | ○주류범위 확대 및 무면허<br>허용<br>- 자가발효음용 가능한 키트를<br>주류에 포함<br>- 음식점·주점 키트 제조 허용                                                                                      |
|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과세<br>(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 가짜석유제품 판매 시<br>교통·에너지·환경<br>세 징수                             | ○과세 대상 추가<br>-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                                                                                                                                 |
| 증권거래세율 인하<br>(증권거래세법 제8조)                                  | - 0.5%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주식<br>세율 인하<br>- 0.45%                                                                                                                          |
| <b>교통·유류 소비세 지원</b>                                        |                                                              |                                                                                                                                                              |
|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br>(조특법 제109조)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br>(조특법 제109조의2)                       | ○차령 10년 이상 노<br>후경유차<br>(적용기한) 2019.12.31                    | ○차령 10년 이상 노후자동차<br>(적용기한) 2020.6.30.                                                                                                                        |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                                        |
|--------------------------------------------------------------|----------------------------------------|-------------------------------------------|
| <b>자영업자 및 업종별 소비세 지원</b>                                     |                                        |                                           |
| 영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세법 제42조)          | (적용기한) 2019.12.31.<br>*특례: 8/108→9/109 | ○일몰 2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           |
|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하(부가세법 제42조)                         | 4/104                                  | ○공제율 인하<br>2/102                          |
| 사업장 경영자가 위탁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호)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사업장 등                   | ○대상 확대<br>- 시내버스 사업자 조합의 위탁계약 형태의 음식용역 포함 |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 (신설)                                   | ○면제 신설<br>- 2015~2022년 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 면제    |
| 외국인 숙박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특법 제107조의2)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1년 연장<br>(적용기한) 2020.12.31.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조특법 제107조의3)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1년 연장<br>(적용기한) 2020.12.31.           |
|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조특법 제108조)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1년 연장<br>(적용기한) 2020.12.31.           |
|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제112조·제121조의15)               | (신설)                                   | ○개별소비세액 75% 감면<br>(적용기한) 2022.12.31.      |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면세품목 신설(조특법 제121조의13)                        | 한도 1회당 600달러                           | ○구매한도 완화<br>- 600달러(주류, 담배 제외)            |
|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1조의23제10항)           | (적용기한) 2019.12.31.                     | ○일몰 2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           |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                                                           |
|--------------------------------------------------------|-----------------------------------------------------|--------------------------------------------------------------|
| <b>세무행정 사항</b>                                         |                                                     |                                                              |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세법 제48조)                        | - 예정신고                                              | ○ 예정고지 허용                                                    |
| 사유가 명확한 경우 낮은 가산세율 적용(부가세법 제60조)                       | - 세금계산서 미발급: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2%<br>- 거짓발급: 중복적용 | ○ 가산세율 합리화<br>- 1%<br>- 중복적용 배제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조특법 제106조의7제7항) | - 이자율 일 0.03%                                       | ○ 지연 이자율 인하<br>- 이자율 일 0.025%                                |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사유 추가 등(조특법 제106조의2)                     | - 지정취소: 환급·공제세액 초과신청 시 재지정 불가: 5년                   | ○ 면세대상 취소요건 강화<br>- 지정취소: 2년 간 판매실적 없는 경우 추가<br>- 재지정 불가: 1년 |

주: ( )의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중점 논의 사항

###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 □ 개정세법 주요 내용(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

-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15%에서 21%로 인상
- 개정취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시행일: 2020.1.1.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

|       | 현행 | 운영석의원안 | 김영춘의원안 | 김두관의원안<br>·정부안 | 개정 |
|-------|----|--------|--------|----------------|----|
| 부가가치세 | 85 | 83     | 50     | 79             | 79 |
| 지방소비세 | 15 | 17     | 50     | 21             | 21 |

주: 김영춘의원안은 단계적으로 이양비율을 인상하는 내용('20년 21%, '21년 25%, '22년 30%, '23년 35%, '24년 40%, '25년 45%, '26년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및 이양 비율 5% → 2014년 11% → 2019년 15%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51,383억원 (연평균) △55,895억원 (2020~2024년) △279,473억원  
- 단, 해당 규모만큼의 세입 귀속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국가 전체로 볼 때 세입 증감은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2019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1%에서 15%로 4%p 인상(△3.3조원)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6%p가 추가 인상
- 지방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양비율의 인상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안건 심사
- 다만, 지방소비세 증가(국세 수입 감소) 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해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중장기적으로 이양수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 (가) 영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의 특례기간 연장

#### □ 개정세법 주요 내용(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주요내용: 과표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

- 개정취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경영비용 부담 완화
- 시 행 일: 2020.1.1.

영세 음식점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조정식<br>의원안              | 유승희<br>의원안   | 이언주<br>의원안 | 이춘석·김광림<br>의원안·정부안 | 개정           |
|------------------------------|------------------------|-------------------------|--------------|------------|--------------------|--------------|
| 과표<br>2억원 이하<br>개인음식점<br>공제율 | 8/108<br>*2019년<br>말까지 | 9/109<br>(전체 개인<br>음식점) | 9/109        | 9/109      | 9/109              | 9/109        |
|                              | 9/109                  | —                       | ~2022.12.31. | —          | ~2021.12.31.       | ~2021.12.3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00년부터 음식점에 대해 공제율을 인상
  - '00년 5/105 → '02년 3/103 → '05년 5/105 → '07년 6/106 → '09년 8/108(개인음식점) → '17년 9/109(과표 2억원 미만 개인음식점, 2년간)
- 2014년 공제대상 매입액 한도(50~30%) 신설 후, 2015년 개인 음식점의 한도 상향(60~45%)
- 2019년 제조업 중 도정업 등 개인사업자 공제율 인상(4/104→6/106)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기준선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한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매출 감소·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 등 영세 개인 음식점사업자가 직면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

###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공제율 인하

#### □ 개정세법 주요 내용(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주요내용: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하
- 개정취지: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 시 행 일: 2020.1.1.

과세유흥장소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정부안   | 개정    |
|--------|-------|-------|-------|
| 공제율 인하 | 4/104 | 2/102 | 2/10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0년 과세유흥장소에 한해 6/106 → 4/104로 인하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31억원 (연평균) 32억원 (2020~2024년) 161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유흥주점의 특성 상 이를 음식점으로 보고 다른 업종(제조업 일반 2/102 등)보다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공제율 인하에 합의
- 다만, 경기둔화 등으로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과중해진 최근의 상황을 감안 할 때 공제율 인하를 통한 추가적 세부담 확대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

### (3)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일몰기한 연장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제107조의3)

-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30일 이하 숙박용역과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특례 기한을 1년 연장
- 개정취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숙박업 및 의료업의 활성화를 지원
- 시 행 일: 2020.1.1.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정부안         |             | 개정          |
|------------|-------------|-------------|-------------|-------------|
| 숙박: 일몰기한   | 2019.12.31. | 2020.12.31. |             | 2020.12.31. |
| 주요 내용      | 현행          | 추경호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미용성형: 일몰기한 | 2019.12.31. | 2022.12.31. | 2020.12.31. | 2020.12.3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숙박용역: 2014년 4월~2015년 3월 한시적 시행 후 2018년 1월 재도입
- 미용성형 의료용역: 2016년 4월 도입 후 2017년 3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3차례 적용기한을 연장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기준선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한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숙박업 및 의료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과세특례의 일몰연장에 대한 이견 없이 합의
- 다만, 지속적인 일몰연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실효성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에 정합한지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

### (4) 농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10항)

- 주요내용: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개정취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
- 시 행 일: 2020.1.1.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 현행          | 김정우<br>의원안  | 추경호<br>의원안  | 정인화<br>의원안  | 오제세<br>의원안  | 개정          |
|----------|-------------|-------------|-------------|-------------|-------------|-------------|
| 적용<br>기한 | 2019.12.31.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2024.12.31. | 2021.12.3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2년 제도를 신설하고 일몰을 2년 적용
- 2014년 일몰기한 3년 연장(~2017.12.31.), 2018년 2년 연장(~2019.12.31.)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기준선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한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농협이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2011년 구조개편 이후 농협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의
- 다만, 동 과세특례는 농협의 사업 안정화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타 금융지주회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감안할 필요

### (5)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 전환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주세법 제21조)

-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개정취지: 국산/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 확보
- 시행일: 2020.1.1.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 전환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내용               | 현행                                     | 권성동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 탁주·맥주<br>종량세<br>전환 | 과세표준<br>- 탁주·맥주: 출고가격<br>또는 수입<br>신고가격 | 과세표준<br>- 탁주: 출고가격<br>또는 수입신고<br>가격<br>- 맥주: 출고수량<br>또는 수입신고<br>수량 | 과세표준<br>- 탁주·맥주: 출고수<br>량 또는 수입신고<br>수량                                                                              | 과세표준<br>- 탁주·맥주: 출고수<br>량 또는 수입신고<br>수량                                                                              |
|                    | 세율<br>- 탁주: 5%<br>- 맥주: 72%            | 세율<br>- 탁주: 5%<br>- 맥주: 835원/ℓ                                     | 세율<br>- 탁주: 41,700원/kl<br>- 맥주: 830,300원/kl<br>- 생맥주: 2021년 말<br>까지 664,200원/kl<br>탁주와 맥주의 세율은<br>매년 소비자물가<br>상승률 반영 | 세율<br>- 탁주: 41,700원/kl<br>- 맥주: 830,300원/kl<br>- 생맥주: 2021년 말<br>까지 664,200원/kl<br>탁주와 맥주의 세율은<br>매년 소비자물가<br>상승률 반영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254억원 (연평균) 14억원 (2020~2024년) 71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국산/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 확보 예상
  - 국산주류의 과세표준에 이윤과 판매비가 포함됨에 따라 국산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주류보다 크다는 지적
- 생맥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조치 필요
  - 생맥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감면율은 37%

## (6)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 개정세법 주요 내용(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 주요내용: 경유차량에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 시 경유세율 부과
- 개정취지: 등유 등을 경유차량에 연료로 주유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율을 부과할 수 없었던 과세형평상의 문제를 해소
- 시 행 일: 2020.1.1.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세금부과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 현행                         | 정부안                                 | 개정                                  |
|------|----------------------------|-------------------------------------|-------------------------------------|
| 과세대상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보관하는 자 | 등유, 부생유 또는 용제를 경유차량 및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자 | 등유, 부생유 또는 용제를 경유차량 및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1년 12월 31일 본조 신설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16억원 (연평균) 16억원 (2020~2024년) 80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과세형평상의 문제를 해소
  - 현행법은 등유·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혼합유가 아닌 100% 등유를 주유 시 과세할 수 없었음
  - 현 개정안을 통해 혼합유가 아닌 등유를 주유 시 경유세율을 부과할 수 있음
-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소
  - 환경오염 초래, 차량성능 저하, 국민안전 위협 등의 문제 방지

## (7)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주요내용: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개정취지: 친환경자동차 조세지원
- 시 행 일: 2020.1.1.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 현행          | 조정식<br>의원안  | 김두관<br>의원안  | 오세세<br>의원안  | 유승희<br>의원안 ·<br>정부안 | 개정          |
|------|-------------|-------------|-------------|-------------|---------------------|-------------|
| 적용기한 | 2019.12.31. | 2021.12.31. | 2023.12.31. | 2024.12.31. | 2022.12.31.         | 2022.12.3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12월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기준선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한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환경개선 효과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효과
  - － 소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되는 것 외에 오염원 배출 없음
  - －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차 정려정책 적극 추진
- 타 친환경차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 － 현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개별소비세 감면
- 특정기업 혜택 편중과 이미 다양한 정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우려
  - － 국산 수소전기차는 단일회사에서만 판매됨
  - － 지자체 보조금 제공, 취득세 감면, 통행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 이미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8)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제1항)

- 주요내용: 10년이상 노후차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개정취지: 대기오염 문제 완화 및 신차 수요 증진
- 시 행 일: 2020.1.1.(6개월 한시)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내용 | 현행                      | 조정식<br>의원안              | 김정우<br>의원안   | 오제세<br>의원안              | 김광림<br>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 차령   | 10년이상                   | 10년이상                   | 15년이상        | 10년이상                   | 10년이상        | 15년이상                  | 10년이상                  |
| 대상차종 | 경유차                     | 경유차                     | 모든연료         | 경유차                     | 경유차          | 모든연료                   | 모든연료                   |
| 교체차종 | 모든연료                    | 모든연료                    | 경유제외         | 모든연료                    | 모든연료         | 경유제외                   | 경유제외                   |
| 감면율  | 70%                     | 50%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현행                     |
| 적용기간 | '19.1.1.~<br>'19.12.31. | '20.1.1.~<br>'20.12.31. | 공포 후 6<br>개월 | '20.1.1.~<br>'20.12.31. | 시행 후 6<br>개월 | '20.1.1.~<br>'20.6.30. | '20.1.1.~<br>'20.6.3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동 제도는 2009년 5월~12월(노후차), 2016년 12월~2017년 6월, 2019년 1월~12월의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음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471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정책목표가 미세먼지 감축인지 자동차 수요 진작인지 명확히 할 필요
  - 자동차 수요진작을 위해서는 감면 대상 범위를 1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필요
  - 신차가 경유차인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할 필요

## (9) 증권거래세율 인하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 주요내용: 비상장주식 거래 및 주식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 0.45%로 인하
- 개정취지: 주식시장의 비효율성 및 왜곡 시정
- 시 행 일: 2020.4.1.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내용 | 현행                                       | 김철민의원안                      | 김병욱의원안    | 조경태의원안    |
|------|------------------------------------------|-----------------------------|-----------|-----------|
| 세율   | 0.5%                                     | 0.1%                        | 0.15%     | 폐지        |
| 탄력세율 | 유가증권·코넥스:<br>0.1%<br>코스닥·K-OTC:<br>0.25% | —                           | —         | —         |
| 시행일  | —                                        | 공포한 날                       | 공포 후 6개월  | 공포 후 3개월  |
| 주요내용 | 최운열의원안                                   | 추경호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세율   | 단계적 폐지                                   | 단계적 폐지                      | 0.45%     | 0.45%     |
| 탄력세율 | '23년까지 단계적<br>인하                         | '22년까지 단계적<br>인하            | (시행령 적용)  | (시행령 적용)  |
| 시행일  | 2020.1.1.<br>(폐지) 2024.1.1.              | 2021.1.1.<br>(폐지) 2023.1.1. | 2020.4.1. | 2020.4.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9년 5월 28일 탄력세율 인하
  - (유가증권·코넥스) 0.15%→0.1%, (코스닥·K-OTC) 0.3%→0.25%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191억원 (연평균) △208억원 (2020~2024년) △1,038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자금 회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 큰 규모의 세수 감소 발생 가능성
  -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제도와 함께 검토 필요

## 5. 재산세제

### 가. 총괄

- 상속세·증여세는 최대주주 부담 완화,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일부 개정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조정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지분율에 관계없이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로 완화
  - 의무적 지출 범위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을 종교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대상에 일정 수입금액 이상 공익법인을 포함하며,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감리제도 도입
-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2019년에는 개정사항이 없음

재산세제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가업승계 지원</b>                          |                                                                                                                                                                                                                             |                                                                                                                                                                                                                                                              |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 관리요건 완화<br>(상증세법 제18조제6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기간: 10년</li> <li>○ 고용유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li> <li>- 사후관리기간 평균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100%(중견기업 120%) 이상</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기간 단축: 7년</li> <li>○ 고용유지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평균의 80% 이상</li> <li>- 사후관리기간 평균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평균의 100% 이상</li> </ul> </li> </ul> |
| 최대주주 할증평가 완화<br>(상증세법 제63조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율 50% 이하: 일반 20%, 중소 10%</li> <li>- 지분율 50% 초과: 일반 30%, 중소 15%</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증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율 관계없이 일반 20%, 중소 0%</li> </ul> </li> </ul>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최대주주 할증평가 완화<br>(상증세법 제63조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증평가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증평가 적용 제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결손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li> </ul> </li> </ul>                                                                                                                                                                                                      |
| 상증세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확대<br>(상증세법 제7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상속기업에 대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 시 20년)</li> <li>- 그 외 5년</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부연납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 상속으로 특례 확대(10년, 20년)</li> </ul> </li> </ul>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30조의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수증자에게도 특례 적용</li> </ul> </li> </ul>                                                                                                                                                                                                                  |
| <b>창업기업 지원</b>                                     |                                                                                                                                                                                                                                                                                                                                            |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완화<br>(조특법 제6조제3항, 제30조의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 제조업 등</li> </ul> </li> <li>○ 창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li> </ul> </li> <li>○ 창업자금 사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 추가</li> </ul> </li> <li>○ 창업기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li> </ul> </li> <li>○ 창업자금 사용기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li> </ul> </li> </ul> |
| <b>서민·중산층 지원</b>                                   |                                                                                                                                                                                                                                                                                                                                            |                                                                                                                                                                                                                                                                                                                                                                          |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상증세법 제2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80%</li> <li>○ 공제한도: 5억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상향: 100%</li> <li>○ 공제한도 상향: 6억원</li> </ul>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확대<br>(상증세법 제52조의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증여세 면제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면제</li> </ul> </li> </ul>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공익법인 책임성·공익성 강화</b>                                 |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의무적 지출관리 강화 등<br>(상증세법 제48조)         | ○ 의무적 지출 공익법인<br>- 성실공익법인만 해당                                                                                               | ○ 의무적 지출 공익법인 확대<br>- 모든 공익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 종교 법인 등 제외)                                                                  |
|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확대 및 감사인 지정 제도·회계 감리제도 도입<br>(상증세법 제50조)   | ○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br>- 자산 100억원 이상<br>(신설)<br><br>(신설)                                                                          | ○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확대<br>- 수입금액 기준 추가<br>○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br>- 자책(4년)+자정(기재부장관 2년)<br>- 국세청장 위탁 가능<br>○ 회계감리제도 도입<br>- 기재부장관 외부 위탁 가능 |
|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br>(상증세법 제50조의3)                      | ○ 공시대상<br>-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 ○ 공시대상 확대 등<br>- 재무제표(주식사항 포함)<br>- 소규모 법인 간편 방식 공시 등                                                                         |
| <b>과세체계 정비</b>                                         |                                                                                                                             |                                                                                                                               |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정비<br>(상증세법 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4) | ○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 납세의무자<br>- 결손법인, 휴폐업 법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과 거래 이익/ 최대주주<br>-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50%이상 법인/ 배우자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 이익/ 지배주주 등 | ○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 납세의무자 등 변경<br>-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30%이상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 지배주주 등                                            |
|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영구화(조특법 제101조)                 | (적용기한) 2020. 12. 31.                                                                                                        |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br>- 적용기한 삭제                                                                                              |
| <b>기타</b>                                              |                                                                                                                             |                                                                                                                               |
|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요건 보완(상증세법 제4조의2제5항)                       | -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 ○ 면제요건 보완<br>- 수증자가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br>기업의 고용유지의무 관련<br>정규직 근로자의 기준<br>변경(상증세법<br>제18조제6항제1호라목) | 정규직 근로자: 통계청 경<br>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br>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근로자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근로자 기준 변경:<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br/>직근로자</li> </ul> </li> </ul>                                          |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br>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br>배제<br>(상증세법 제18조제9항)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상속공제 배제 요건<br/>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기업의<br/>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br/>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유죄<br/>확정판결 시 가업상속공제<br/>배제</li> </ul> </li> </ul>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중점 논의 사항

### (1)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완화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완화
- 개정취지: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사후관리기간<br>(현행)                                                          | 박명재·정갑윤·김규환·<br>추경호·이현재·<br>심재철·이종구의원안                                                                                                                                                                                                           | 박주현·윤후덕·<br>이원욱·유승희의<br>원안 | 정부안  | 개정                                 |
|-------------------------------------------------------------------------|--------------------------------------------------------------------------------------------------------------------------------------------------------------------------------------------------------------------------------------------------|----------------------------|------|------------------------------------|
| 10년                                                                     | 5년                                                                                                                                                                                                                                               | 7년                         | 7년   | 7년                                 |
| 사후 추정사유<br>(현행)                                                         | 추경호·정갑윤·유승희·이현재·박명재·<br>이종구·이원욱의원안                                                                                                                                                                                                               |                            | 정부안  | 개정                                 |
| 연도별 정규직<br>근로자 수가 상속<br>직전 2년 평균의<br>80% 이상 미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도별 고용유지기준 삭제(추경호의원안)</li> <li>60%(정갑윤·이현재의원안)</li> <li>70%(유승희·박명재의원안)</li> <li>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이 모두 80%에 미달(이종구의원안)</li> <li>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80%에 미달(이원욱의원안)</li> </ul>                                  |                            | -    | 총급여총액 80% 추가                       |
| 상속개시 후 10년<br>평균 정규직 근로자<br>수가 상속직전<br>2년 평균의 100%<br>미달<br>(중견기업 1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추경호의원안)</li> <li>70%(중견기업은 100%)(정갑윤의원안)</li> <li>80%(중견기업은 100%)(유승희·이현재의원안)</li> <li>90%(박명재의원안)</li> <li>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이 모두 100%에 미달(이종구의원안)</li> <li>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100%에 미달(이원욱의원안)</li> </ul> |                            | 100% | 7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100% 또는 총급여총액 1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 공제율, 공제한도 등은 의견대립
- 사후관리기간 단축, 고용유지의무 완화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

## (2)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완화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 주요내용: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른 차등할증 폐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
- 개정취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 시행일: 2020.1.1.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완화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 현행     |        |    | 이종구·추경호·이현재의원안 |  |  |
|-----|--------|--------|----|----------------|--|--|
| 할증률 | 최대주주   | 할증률(%) |    | 전체 폐지          |  |  |
|     | 지분율    | 일반     | 중소 |                |  |  |
|     | 50% 이하 | 20     | 10 |                |  |  |
|     | 50% 초과 | 30     | 15 |                |  |  |

|     | 송언석의원안   |  | 정부안    |        | 개정   |        |    |    |
|-----|----------|--|--------|--------|------|--------|----|----|
| 할증률 | 중소기업만 폐지 |  | 최대주주   | 할증률(%) | 최대주주 | 할증률(%) |    |    |
|     |          |  | 지분율    | 일반     | 중소   | 지분율    | 일반 | 중소 |
|     |          |  | 50% 이하 | 20     | 0    | 50% 이하 | 20 | 0  |
|     |          |  | 50% 초과 | 20     | 0    | 50% 초과 | 20 | 0  |

주: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말까지 미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중소기업에 대해 할증평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
-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중견기업도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제기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상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 가치 평가 및 할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3) 외부감사대상의 확대 및 감사인 지정 제도·회계 감리제도 도입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 주요내용: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수입금액을 추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며, 회계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 개정취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 시행일
  - － 외부감사대상 확대: 2020.1.1.
  - －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2022.1.1.

외부감사 공익법인 확대, 감사인 지정제도·회계 감리제도 도입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         | 현행    | 추경호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 외부감사 대상기준 |         | 자산 규모 | 현행                   | 자산·수입규모                 | 자산·수입규모                 |
| 감사인 지정 제도 | 주체      |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위탁 가능) | 국세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위탁 가능)    |
|           | 대상 공익법인 |       | 외부 회계감사 의무 공익법인      | 외부 회계감사 의무 공익법인 중 일부 법인 | 외부 회계감사 의무 공익법인 중 일부 법인 |
|           | 지정 빈도   |       | 자율(3년)+ 지정(2년)       | 대통령령 위임                 | 자율(4년)+ 지정(2년)          |
| 회계 감리제도   |         | (신설)  | —                    | 기획재정부장관 감리(위탁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 감리(위탁 가능)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공익법인 확대,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에 공감
- 감사인 지정 빈도 등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제기

## 6. 기타세제

### 가. 총괄

- 국세징수법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국세의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그 이외에 체납액 징수 순위 명확 등 국세징수 합리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체납액 징수 순위 가운데 3순위였던 ‘가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한 ‘가산세’를 추가함
- 체납 국세 세목을 관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
- 매일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 가능
- 과세관청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우회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의 정당한 사업목적 등을 입증
- 조세조약상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적용
- 정상가격 산출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이 입수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추정과세

□ 관세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향으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관세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관세청 및 세관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검사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
-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관세 납부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이후 환불 시 관세 환급 허용

기타세제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국세징수법</b>                              |                               |                                                           |
| 체납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적용금지(제7조) | ○ 관허사업 제한이 되는 체납세목<br>- 모든 국세 | ○ 관허사업 제한이 되는 체납세목 제한<br>-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
|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7조의5)              | (신설)                          | ○ 감치명령제도 신설<br>- 1억원 이상 국세 3회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감치 신청    |
| <b>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b>                      |                               |                                                           |
| 우회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제2조의2)             | (신설)                          | ○ 우회거래 입증책임 전환<br>- 우회거래의 정당한 사업목적 등에 대해 납세자 입증           |
|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제5조)                       | (신설)                          | ○ 준용규정 신설<br>- 조세조약상 정의하지 않은 문구 및 용어는 국내 세법상 정의 또는 사용에 따름 |
| <b>관세법</b>                                |                               |                                                           |
|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신설(제118조의2)                | (신설)                          | ○ 납세자보호관 등 신설<br>-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 등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관세법</b>                                 |                                                                                              |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br>(제118조의4)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및 세관에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등</li> </ul> </li> </ul>                                                            |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제25조)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컨테이너 검사비용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li> <li>- 시행: 2020.7.1.</li> </ul> </li> </ul>   |
|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br>(제247조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검사수수료 면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출검사 파출수수료 면제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수수료 면제 추가</li> </ul> </li> </ul>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br>(제196조)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공항 내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li> </ul> </li> </ul>                                                           |
| 기업회계기준 매장별 매출액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제176조의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매장별 매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특허수수료 산정기준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세판매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장별 매출액으로 법률에 규정</li> </ul> </li> </ul>                           |
|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환불 시 관세 환급 허용(제106조의2)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세 환급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자진 신고하여 과세통관하여 국내 반입한 이후에도 환불 가능, 환불 시 납부한 관세액 환급</li> <li>- 시행: 2021.1.1.</li> </ul> </li> </ul> |
|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등(제246조의3)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 안전성 검사 요청 가능</li> </ul> </li> </ul>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관세법</b>                                          |                                                                                              |                                                                                                                                                                                                           |
|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 신설 (제19조, 제270조)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구매대행자 의무 등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부의무 부과 및 관세편취행위 시 과세포탈죄 적용</li> </ul> </li> </ul>                 |
|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제93조제18호)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석 관세 면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하여 관세 면제</li> </ul> </li> </ul>                                                           |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 (제16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에게 보세사의 자격 부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관세행정 종사한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의 보세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li> </ul> </li> </ul>                                 |
|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 (제116조의4)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치명령제도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범위에서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결정으로 감치</li> </ul> </li> </ul> |
| <b>교육세법</b>                                         |                                                                                              |                                                                                                                                                                                                           |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제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세의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세 세율체계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주: 주세 세액의 30%</li> </ul> </li> </ul>                                                                |
| <b>농어촌특별세법</b>                                      |                                                                                              |                                                                                                                                                                                                           |
|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시 비과세 (제4조)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비과세 항목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li> </ul> </li> </ul>                                            |

| 주요 내용                                                           | 현 행                | 개 정                                                                                                                                                                                                                                                              |
|-----------------------------------------------------------------|--------------------|------------------------------------------------------------------------------------------------------------------------------------------------------------------------------------------------------------------------------------------------------------------|
| <b>조세특례제한법</b>                                                  |                    |                                                                                                                                                                                                                                                                  |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의<br>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br>감면 신설(제93조제18호)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공장 관세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br/>중소·중견기업이 물품의<br/>제조·가공 등을 위하여<br/>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로<br/>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br/>품 관세 면제</li> <li>－ 적용기한: 2022.12.31.</li> </ul> </li> </ul> |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br>수입 금지금(金地金)에 대한<br>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br>(제126조의7) | (적용기한) 2019.12.31. | ○ 일몰 2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                                                                                                                                                                                                                                 |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br>적용기한 연장(제140조)                                 | (적용기한) 2019.12.31. | ○ 일몰 3년 연장<br>(적용기한) 2022.12.31.                                                                                                                                                                                                                                 |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br>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br>적용기한 연장<br>(제93조제18호)      | (적용기한) 2019.12.31. | ○ 일몰 2년 연장<br>(적용기한) 2021.12.31.                                                                                                                                                                                                                                 |

주: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중점 논의 사항

### (1)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명령

#### □ 개정세법 주요 내용(국세징수법 제7조의5)

- 주요내용: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 개정취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시 행 일: 2020.1.1.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명령제도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 행  | 김정우의원안                                                                                                                                                                                                                                                                     | 정부안                                                                                                                                                                                                                                                                                  | 개정                                                                                                                                                                                                         |
|-----------------------|------|----------------------------------------------------------------------------------------------------------------------------------------------------------------------------------------------------------------------------------------------------------------------------|--------------------------------------------------------------------------------------------------------------------------------------------------------------------------------------------------------------------------------------------------------------------------------------|------------------------------------------------------------------------------------------------------------------------------------------------------------------------------------------------------------|
| 고액·상습<br>체납자 감치<br>명령 | (신설) | <p>국세청장의 체납자 감치<br/>신청</p> <p>-(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3회 이상 체납</li> <li>· 체납금액 2억원 이상</li> <li>· 체납된 국세의 납부<br/>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br/>사유 없이 체납</li> </ul> <p>-(절차)</p> <p>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br/>심의위원회의 심의를<br/>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br/>검사에게 체납자<br/>감치 신청</p> | <p>국세청장의 체납자 감치<br/>신청</p> <p>-(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3회 이상 체납</li> <li>· 체납금액 1억원 이상</li> <li>· 호화생활을 하는 등<br/>국세의 납부능력이<br/>있음에도 정당한<br/>사유 없이 체납</li> </ul> <p>-(절차)</p> <p>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br/>심의위원회의 의결을<br/>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br/>검사에게 체납자<br/>감치 신청</p> | <p>국세청장의 체납자 감치<br/>신청</p> <p>-(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3회 이상 체납,</li> <li>· 체납금액 2억원 이상</li> <li>· 국세의 납부능력이<br/>있음에도 정당한<br/>사유 없이 체납</li> </ul> <p>-(절차)</p> <p>정부안과 동일</p>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이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통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
- 다만, 감치명령제도로 중대한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이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체납한 경우’라는 요건은 과세 관청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 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호화생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부안을 수정의결

## (2) 우회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 □ 개정세법 주요 내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주요내용: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
- 개정취지: 국제적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실효성 제고
- 시 행 일: 2020.1.1.

### 우회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 행  | 정부안                                                                                                                                | 개정                                                                                                                                 |
|--------------------------|------|------------------------------------------------------------------------------------------------------------------------------------|------------------------------------------------------------------------------------------------------------------------------------|
| 우회거래 과세<br>당국 입증책임<br>완화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회거래에 대해 납세자 입증 책임 부여</li> <li>- 국내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거래하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없음을 납세자가 입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회거래에 대해 납세자 입증 책임 부여</li> <li>- 국내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거래하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없음을 납세자가 입증</li> </ul>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

- (2021년) 25억원 (연평균) 25억원 (2021~2024년) 100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조세 부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한 사업목적 등을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대부분 공감

### (3) 관세청장의 납세자권리보호 신설

#### □ 개정세법 주요 내용(관세법 제118조의2)

- 주요내용: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
-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실현
- 시행일: 2020.7.1.

관세청장의 납세자권리보호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 현행   | 유승희의원안                                                                                               | 개정                                                                                                   |
|-------------|------|------------------------------------------------------------------------------------------------------|------------------------------------------------------------------------------------------------------|
| 납세자<br>권리보호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li> <li>○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br/>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li> <li>○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br/>설치</li> </ul>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해당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와 공무원 증원에 해당하여 반대한다는 견해가 제시

## 7. 지방세제

### 가. 총괄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안을 중심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일몰연장 및 제도신설
  - 지방세법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이 통과되었으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6~9억원 구간 점증구조 도입과 적용대상 조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5%→21%로 인상
  - 2018년 발표한 재정분권 확충방안(2018.10.30.)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안 제출(2019.9.27.)
    - － 현행 15%의 취득세 보전분 6%에 관한 조항은 삭제
  -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박맹우·김민기·김진표의원안은 16%, 이찬열 의원안은 20%, 김현미·김두관의원안은 21%, 김영춘의원안은 50%로 인상하며, 취득세 보전분 6%에 관한 조항을 유지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에 있어서 불연속적인 세율 적용을 보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특례 배제
  - 세율이 6억원과 9억원을 전후하여 불연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6~9억원 구간을 매150만원마다 세율이 0.01% 인상되는 것으로 설계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표준세율 4%를 적용

## 지방세제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                                                                    |
|-------------------------------------------------------|------------------------------------------------------------------------|-----------------------------------------------------------------------|
| <b>지방세법</b>                                           |                                                                        |                                                                       |
| 지방소비세율 인상<br>(제69조제2항)                                | 부가가치세: 85%<br>지방소비세: 15%<br>취득세 보전분:<br>지방소비세 중 6%                     | 부가가치세: 79%<br>지방소비세: 21%<br>취득세 보전분 삭제                                |
| 6~9억원 구간 주택유상거래<br>사선형 점증구조 취득세율 도입<br>(제11조)         | 유상거래 취득세율:<br>6억원~9억원 2%                                               | 유상거래 취득세율:<br>6억원~9억원:<br>[(취득가액×2/3억원)-3]%                           |
| 1세대 4주택 이상 가구 주택 취득<br>시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제외<br>(제11조제4항) |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br>자 주택 취득시:<br>6억원 이하: 1%<br>6억원~9억원: 2%<br>9억원 이상: 3% |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br>자 주택 취득시: 4%                                        |
| <b>지방세기본법</b>                                         |                                                                        |                                                                       |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br>납세의무 적용 특례<br>(지방세기본법 제154조)         | (신설)                                                                   | ○과세특례 신설<br>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br>으로 전환된 법인은 전환<br>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br>교로 취급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중점 논의 사항

#### (1) 지방소비세율 인상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지방세법 제69조제2항)

-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취득세 보전분 6%에 관한 내용을 삭제
-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과 현행 지방세 구조가 재산과세에 의존하는 비중 감소
- 시행일: 2020.1.1.

###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 현행                     | 이찬열의원안                        | 박맹우의원안                        | 김민기의원안                |                  |
|-----------------------------------------|------------------------|-------------------------------|-------------------------------|-----------------------|------------------|
| 부가가치세                                   | 85%                    | 84%                           | 84%                           | 84%                   |                  |
| 지방소비세                                   | 15%                    | 16%                           | 16%                           | 16%                   |                  |
| 적용연도 <sup>1)</sup><br>※지방소비세율<br>단계적 인상 | -                      | 2019년<br>(’17~’18년)<br>14~17% | 2022년<br>(’17~’21년)<br>11~15% | 2017년                 |                  |
|                                         | 김현미의원안                 | 김두관의원안                        | 김영춘의원안                        | 홍익표·<br>정인화의원안<br>정부안 | 개정 <sup>2)</sup> |
| 부가가치세                                   | 79%                    | 79%                           | 50%                           | 79%                   | 79%              |
| 지방소비세                                   | 21%                    | 21%                           | 50%                           | 21%                   | 21%              |
| 적용연도 <sup>1)</sup><br>※지방소비세율<br>단계적 인상 | 2018년<br>(’17년)<br>16% | 2018년<br>(’17년)<br>13%        | 2026년<br>(’20~’26년)<br>21~50% | 2020년                 | 2020년            |

주: 이찬열의원안(2016.5.30.발의), 박맹우의원안(2016.5.30.발의), 김민기의원안(2016.6.9.발의), 김현미의원안(2016.7.20.발의), 김진표의원안(2016.11.1.발의), 김두관의원안(2019.4.22.발의), 김영춘의원안(2019.5.20.발의), 홍익표의원안(2019.9.24.발의), 정인화의원안(2019.9.30.발의)

1) 단계적 인상안인 경우 최종 세율 기준

2) 홍익표·정인화의원안·정부안에 따라 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및 전환 비율 5%
- 2014년 취득세 인하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5%→11%
- 2018년 재정분권 확충방안에 의거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 11%→15%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51,383억원 (연평균) 55,895억원 (2020~2024년) 279,473억원  
- 단, 해당 규모만큼의 세입 귀속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국가 전체로 볼 때 세입 증감은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하락하는 반면,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  
- 국제인 부가가치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인상범위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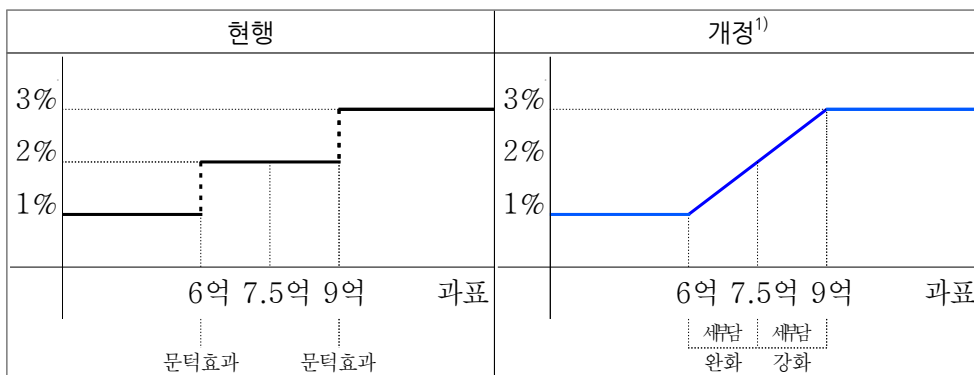
-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역간 재정격차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
  -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한 지방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

### □ 개정세법 주요 내용(지방세법 제11조)

- 주요내용: (취득가액 6~9억원 구간 세율체계 조정) 취득가액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매15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을 0.01%씩 높이는 사선형 점증구조 세율체계 도입  
(다주택자 표준세율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취득시 표준세율(4%) 적용
- 개정취지: (세율체계 조정) 세율이 불연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6억원과 9억원 전후의 문턱효과 해소  
(다주택자 표준세율 적용) 투기적 주택 수요 억제
- 시 행 일: 2020.1.1.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정내용 비교



주: 1) 6~9억 구간 중 7.5억을 기점으로 현행대비 세부담 강화구간과 완화구간을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개정 연혁

- 2013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인하
  - －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 →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6억원/9억원 기준, 1%/2%/3% 누진세율 적용

□ 중점 논의 사항

- 개정 결과, 6억~7.5억원 구간에서는 현행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고, 7.5억~9억원 구간에서는 현행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
-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6억원, 9억원 지점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취득가액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는 현상(문턱효과) 완화 기대
- 다만, 세율이 취득가액에 따라 산식에 대입하여 산출됨으로써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세액계산에 번거로움이 발생할 소지

# IV

## 유형별 심사 반영사항

1. 의원발의 개정안 중 통과법안
2. 정부제출 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3. 부대의견 채택 법률
4. 쟁점이 되었던 계류 법안



## IV. 유형별 심사 반영사항

### 1. 의원발의 개정안 중 통과법안

- 정부안에는 해당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반영된 법안 기준임

#### 가.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 금액 산정 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 (윤후덕의원안)
  - 현재 시행령에 규정 중인 무신고가산세 금액 산정시 필요한 구체적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구체적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 규정(윤후덕의원안)
  - 현재 시행령에 규정 중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홍일표의원안)
  -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0.1.1.에서 2022.2.3.으로 연기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김정우의원안)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 전환 전 세법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모든 세법에 대해 발의되었으나,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 가결(부대의견)

## 나. 소득세법

-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윤영일 · 김정호 · 황주홍 · 김성찬의원안)
  - 어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는 다수의 의원안 발의, 일정금액의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안으로 개정
-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조정(김병욱 · 이종구 · 최교일 · 정갑윤의원안)
  -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적용률을 상향조정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적용률: 0.2% → 0.3%
    - 수입금액 100억원~500억원의 적용률: 0.1% → 0.2%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이춘석의원안)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까지 투자하여 3년이상 보유 시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신문 등 구독비용에 대한 공제 신설(김광림 · 추경호의원안)
  - 신문의 구독비용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공제항목에 추가하고, 추가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신문의 구독비용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공제항목에 추가
  - 추가공제한도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과 합산하여 연 100만원을 부여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수정안 가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이현재 · 김경협 · 김영우 · 김한정 · 이언주의원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80~100%까지 인상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40%로 확대하는 수정안 가결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신설 (윤후덕의원안)

- 2020년까지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2022년까지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김정우의원안)

- 기존 비상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다. 법인세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기준 중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윤후덕의원안)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기준에서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요건과 통일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 주요 내용 | 현행                  |            |                          | 개정(윤후덕의원안)          |            |                          |
|-------|---------------------|------------|--------------------------|---------------------|------------|--------------------------|
| 일반법인  | 피출자<br>법인구분         | 익금불<br>산입률 | 출자비율                     | 피출자<br>법인구분         | 익금불<br>산입률 | 출자비율                     |
|       | 주권<br>상장법인          | 100%       | 100%                     | 주권<br>상장법인          | 100%       | 100%                     |
|       |                     | 50%        | 30% <u>초과</u><br>100% 미만 |                     | 50%        | 30% <u>이상</u><br>100% 미만 |
|       |                     | 30%        | 30% <u>이하</u>            |                     | 30%        | 30% <u>미만</u>            |
|       | 주권<br>상장법인<br>외의 법인 | 100%       | 100%                     | 주권<br>상장법인<br>외의 법인 | 100%       | 100%                     |
|       |                     | 50%        | 50% <u>초과</u><br>100% 미만 |                     | 50%        | 50% <u>이상</u><br>100% 미만 |
|       |                     | 30%        | 50% <u>이하</u>            |                     | 30%        | 50% <u>미만</u>            |
| 지주회사  | 자회사<br>구분           | 익금불<br>산입률 | 출자비율                     | 자회사<br>구분           | 익금불<br>산입률 | 출자비율                     |
|       | 주권상장<br>법인          | 100%       | 40% <u>초과</u>            | 주권상장<br>법인          | 100%       | 40% <u>이상</u>            |
|       |                     | 90%        | 30% <u>초과</u><br>40% 이하  |                     | 90%        | 30% <u>이상</u><br>40% 미만  |
|       |                     | 80%        | 30% <u>이하</u>            |                     | 80%        | 30% <u>미만</u>            |
|       | 주권상장<br>법인 외의<br>법인 | 100%       | 80% <u>초과</u>            | 주권상장<br>법인 외의<br>법인 | 100%       | 80% <u>이상</u>            |
|       |                     | 90%        | 50% <u>초과</u><br>80% 이하  |                     | 90%        | 50% <u>이상</u><br>80% 미만  |
|       |                     | 80%        | 50% <u>이하</u>            |                     | 80%        | 50% <u>미만</u>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 · 오제세 · 김정우의원안)

- 제약업계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유망산업인 의약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sup>15)</sup>
- 적용기한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를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로 구체화하는 대안 가결

15) 정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안 제출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오제세의원안)
  -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 적용기한을 2020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추경호의원안 가결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김정호의원안)
  -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수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원안이 발의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에 맞추어 감면을 확대하는 대안 가결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정식의원안)
  -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화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
  - 당초 의원안은 적용기한 5년에 운송비용의 10%를 공제하는 것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적용기한을 2022년말까지 3년간에 운송비용의 1%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운송비용의 3%를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안 가결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이춘석의원안)
  - 식품산업의 집적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유도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김경협의원안)
  - 한국거래소를 통한 석유제품 거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
  - 논의 과정에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공급가액의 0.1%)는 예정대로 일몰을 종료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공급가액의 0.2%)만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 라. 소비세제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보완(유승희의원안)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법률에 명확화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김영진의원안)
  - 영세 법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적용
- 사업장 경영자가 위탁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추경호의원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시내버스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면세품목 신설(윤후덕의원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매한도(1회당 600달러) 중 주류,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외
-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김정우의원안)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주류의 범위 확대 및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김정우의원안)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키트 등을 주류로 포함시키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및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김정우의원안)

- 2022년까지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75%를 감면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마. 재산세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이현재·추경호의원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공제한도가 6억원으로 수정되어 가결
    - － 이현재의원안: 공제율 80% → 100%, 공제한도 5억원 → 8억원
    - － 추경호의원안: 공제율 80% → 100%, 공제한도 5억원 → 9억원

#### 바. 기타세제

-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신설(유승희의원안)
  - 관세청 및 세관에 각각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는 등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납세자의 협력의무 신설(유승희의원안)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납세자의 성실협력의무를 규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유승희의원안)
  - 관세청 및 세관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하는 등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신설(유승희의원안)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납세자에게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수출검사 파출수수료 폐지(최교일의원안)
  -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세관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 설치(김광림의원안)
  - 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을 설치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한 상향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김영진 의원안)
  -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반출 의무와 국외반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현장인도 제한을 명문화하며,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구체적 대상, 시행시기 등이 수정되어 가결
- 기업회계기준 매장별 매출액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김정우 의원안)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장별 매출액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관세청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권 신설 등(강병원의원안)
  -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재량규정으로 수정되어 가결
-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 신설(김경협의원안)
  -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부의무 부과 및 관세편취행위 시 과세포탈죄를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구매대행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가결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윤영석의원안)
  -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보세운송업자등과 같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 등록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시행시기가 1년 6개월 유예되어 가결

-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정세균의원안)
  -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조정식의원안)
  -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의 보세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만 면제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시행시기가 2020년 1월로 수정되어 가결

#### 사. 지방세제

-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제외(윤후덕의원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4주택 이상으로 수정되어 가결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홍익표의원안)
  -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낮추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

## 2. 정부제출 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 가. 국세기본법

- 다른 행정기관과 과세정보 공유 시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조항 추가
  - 정부는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의 공유를 확대하는 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과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누설 및 목적외 사용시 2천만원 과태료 조항 추가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에 예외규정 설치
  - 정부는 현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징수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로 일원화하는 안을 제출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하는 단서 조항 추가
-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기관 확대
  - 정부는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의 제공대상을 정부출연기관 이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제공대상을 모든 국가행정기관(국회 소속기관 포함)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 나. 소득세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의 공제율을 40%로 인상하는 안이 제출되었으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공제를 추가하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의 공제율은 현행(30%)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세액 계산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
  -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것임을 추가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축소 적용 범위 조정
  - 개정안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한도를 축소 적용하는 안이 제출되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의 적립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 보장 범위 보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경정 등의 청구)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경정청구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조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60일로 수정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을 명확화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면제대상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자’로 규정한 안을 제출하였으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 수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조정
  - ‘환산가액’ 용어를 ‘환산취득가액’으로 변경하고, 증축한 건축물을 5년 내에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환산취득가액의 5%,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를 부과하는 안이 제출됨
  - 국회 논의 결과 신축 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의 경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수정

- 기준시가 고시 전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항목(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조문에 추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대상 조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2021년부터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는 법안(임대기간 4년이상: 30%→20%, 8년 이상: 75%→50%)이 제출되었으나,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율 유지, 2호 이상 임대 시 2021년부터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 근로장려금 홀별이 가구 범위 규정의 부양 직계존속 판정시기 보완
  - 홀별이 가구의 범위를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까지 확대하고 직계존속 부양 요건 해당 여부 판정시기를 규정하는 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판정시기를 추가
-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범위를 명확화
  -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출되었고,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하도록 수정

## 다. 법인세법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주식 취득에서 주식취득과 함께 사업·자산의 양수를 추가
  - 정부안은 세제지원 방식을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주식취득’으로 한정하고 공제요건을 주식 등 50% ‘초과’ 취득으로 규정
  - 국회 논의 결과 ‘주식취득’과 함께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를 추가하고, 주식 등 50% ‘이상’ 취득으로 수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기업 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 정부안은 대/중견/중소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으로 1년 한시적 상향하는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기한 동안 상향된 수준이 적용되고, 대기업 공제율 상향만 1년 한시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대/중견/중소 공제율을 현행 3%/7%/10%에서 1%/3%/7%로 하향하는 내용
  - 적용기한 3년 연장은 정부안을 반영하되 공제대상 확대(다큐멘터리 전체 및 오락 추가) 및 상향 입법(현재 시행령 규정)은 의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 라. 소비세제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요건을 확대하고, 재지정 신청요건을 강화
  - 정부안은 면세유 판매업자가 2년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시행일 2021년)
  - 2년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 노후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차령 제한을 확대

- 정부안은 차령 15년 이상의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하는 내용
-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상을 차령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마. 재산세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 명확화

-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거래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바. 기타세제

□ (국세징수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보완

- 정부는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호화생활”용어를 삭제하고 체납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수정

□ (관세법) 관세청장·세관장의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

- 통고처분 면제기준(범칙금 30만원 이하, 추징금·물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을 법률에 규정

사. 지방세제

□ 가산세 감면을 일부 확대 및 세분화

- 가산세 감면율에 ‘1개월 이내 90%’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제외 조항 정비

- 주민세 균등분의 비과세 대상으로 제77조제2항에 명시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 제외대상을 규정한 제75조에 옮겨 규정하고,

제77조제2항을 삭제하는 정부안이 제77조제2항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 3. 부대의견 채택 법률

#### 가. 국세기본법

#####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 부대의견: 국회는 제13조제8항 신설이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하는 세제지원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부는 공익목적 수행,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한 법인에 해당 동 사례를 근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세제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관련안건: 세법상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김정우의원안)

#####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사세 이자율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동

- 부대의견: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금리수준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 관련안건: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사세 이자율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동(박명재 의원안)

#### 나. 소득세법

#####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 부대의견: 정부는 고령화 등 어업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의 적정 수준(소득금액 5천만원 상당)을 결정하고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
- 관련안건: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윤영일·김정호·황주홍·김성찬의원안)

##### □ 소기업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금액 상향

- 부대의견: 정부는 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용승용차의 필요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
- 관련안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중 운행기록 작성 의무 적용대상에서 소기업 제외(유승희의원안)

- 점증구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조정
  - 부대의견: 정부는 근로장려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0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관련안건: 점증구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조정(정부안)

## 다. 법인세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정
  - 부대의견: 정부는 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
  - 관련안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중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의 적용대상에서 소기업 제외(유승희의원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제외 승용자동차에 연구 개발목적 승용자동차 추가(정부안)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중 출자비율 기준 합리화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구간 세분화 또는 지분율에 따른 연속형 익금불산입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관련안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기준 변경(윤후덕의원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확대
  - 부대의견: 정부는 버스, 건설중장비 운전교습 등 직업훈련 목적의 운전학원 사업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관련안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운전학원의 직업훈련 목적 교습 부문 추가(김광림의원안)
-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추가
  - 부대의견: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 분야 등 중요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관련안건: 고수입의존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이원욱의원안),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및 공제율 상향(정성호의원안)

#### □ 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

- 부대의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스페인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내년 상반기 중 특허 조사·분석·출원·등록·유지 등 업무를 R&D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관련안건: 중소기업 특허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병국·박정·유승회의원안), 중소기업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신설(유승회의원안), 연구·인력개발의 범위에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포함하여 세제지원 확대(김광림의원안)

####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부대의견: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
- 관련안건: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원욱·이철희·윤후덕의원안)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부대의견: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이 후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할 것
- 관련안건: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오제세의원안)

####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감면 확대

- 부대의견: 정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를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에 준하여 확대할 것
- 관련안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김정호의원안)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 부대의견: 정부는 R&D 세액공제 시행령 개정 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반영하여 세제지원을 유지할 것
- 관련안건: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 의원안)

### 라. 소비세제

#### □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대응 장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관련안건: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추경호의원안)

#### □ 연안화물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중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들이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황 함유량 규제 강화로 경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류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 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관련안건: 부가가치세 등 면제대상에 연안화물선박용 석유류 추가(강창일·김학용의원안)

### 마. 재산세제

####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상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 가치 평가 및 할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관련안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이종구·추경호·이현재의원안),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완화(송언석의원안, 정부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조정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과세동향 등을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0년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관련안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추경호·이현재·이종구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제윤경의원안)

□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비거주자 규정을 통한 증여세 회피 가능성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관련안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김영진의원안)

바. 기타세제

□ 관세청 산하 납세자보호관 신설 등

- 부대의견: 관세청은 납세자보호관과 담당관의 독립성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력증원은 최소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방안, 인력증원 추진계획 및 현황 등을 2020년 상반기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관련안건: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신설(유승희의원안), 납세자의 협력 의무 신설(유승희의원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유승희의원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신설(유승희의원안)

## 4. 쟁점이 되었던 계류 법안

### 가. 소득세

####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2천만원)을 단계적으로 인하
  - 현행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로 납세의무 종결(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개정취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소득 유형간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의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유승희의원안                                                                         |
|------------------|--------------|--------------------------------------------------------------------------------|
| 금융소득종합과세<br>기준금액 | 2천만원         | '20.1.1.~'20.12.31. 1,700만원<br>'21.1.1.~'21.12.31. 1,400만원<br>'22.1.1. 이후 1천만원 |
| 금융소득<br>원천징수 세율  | 이자·배당소득의 14% | 이자·배당소득의 14%                                                                   |

주: 2018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박광온·오세재의원안은 본 표에 표기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1994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1.1. 시행) 도입
- 2011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설정
-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유승희의원안: (2020년) 8억원 (연평균) 2,599억원 (2020~2024년) 1조 2,997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소득유형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
-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용역과제를 수행('20년 11월 완료 예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안 마련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견을 수용

(2)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인상
- 개정취지: 공익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및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등의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 이현재의원안                                     |      |
|-------------------------------|--------------------------------------------|-----|--------------------------------------------|------|
| 양도소득세 감면율                     | 구 분                                        | 감면율 | 구 분                                        | 감면율  |
|                               | 현금보상                                       | 10% | 현금보상                                       | 70%  |
|                               | 일반채권보상                                     | 15% | 일반채권보상                                     | 80%  |
|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30%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90%  |
|                               |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40% |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100% |
| 만기보유채권 만기보유 불이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률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15%<br>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25% |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10%<br>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20% |      |

| 주요 내용                                   |  | 김경협의원안                                     |                          | 정재호의원안                                     |     |
|-----------------------------------------|--|--------------------------------------------|--------------------------|--------------------------------------------|-----|
| 양도소득세<br>감면율                            |  | 구 분                                        | 감면율                      | 구 분                                        | 감면율 |
|                                         |  | 현금보상                                       | 50%                      | 현금보상                                       | 70% |
|                                         |  | 일반채권보상                                     | 55%                      | 일반채권보상                                     | 80% |
|                                         |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65%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75% |
|                                         |  |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75%                      |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 80% |
| 만기보유채권<br>만기보유 불이행에<br>따른 양도소득세 추<br>징률 |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10%<br>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20% |                          |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10%<br>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20% |     |
| 주요 내용                                   |  | 정성호의원안                                     |                          |                                            |     |
| 양도소득세<br>감면율                            |  | 보상시작일부터 3개월이내<br>토지수용 합의하지<br>못한 경우 감면율    |                          | 보상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br>토지수용 합의한<br>경우 감면율       |     |
|                                         |  | 현금보상                                       | 10%                      | 현금보상                                       | 40% |
|                                         |  | 일반채권보상                                     | 15%                      | 일반채권보상                                     | 45% |
|                                         |  | 3년 이상<br>만기보유 채권보상                         | 30%                      | 3년 이상<br>만기보유 채권보상                         | 60% |
|                                         |  | 5년 이상<br>만기보유 채권보상                         | 40%                      | 5년 이상<br>만기보유 채권보상                         | 70% |
| 만기보유채권<br>만기보유 불이행에<br>따른 양도소득세 추징률     |  | 현행                                         |                          |                                            |     |
| 주요 내용                                   |  | 김영우의원안                                     | 김한정의원안                   | 이언주의원안                                     |     |
| 양도소득세<br>감면율                            |  | 100%                                       | 100%                     | 현금보상 70%,<br>그 외 100%                      |     |
| 만기보유채권<br>만기보유 불이행에<br>따른 양도소득세 추징률     |  | 만기보유채권 불이<br>행에 따른 추징 삭제                   | 만기보유채권 불이<br>행에 따른 추징 삭제 | 만기보유채권 불이<br>행에 따른 추징 삭제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sup>16)</sup>

- 이현재의원안: (2020~2021년) △12,677억원 (연평균) △6,338억원
- 김경협의원안: (2020~2021년) △8,210억원 (연평균) △4,105억원
- 정재호의원안: (2020~2021년) △12,666억원 (연평균) △6,333억원
- 김영우·김한정의원안: (2020~2021년) △18,110억원 (연평균) △9,055억원
- 이언주의원안: (2020~2021년) △14,056억원 (연평균) △7,028억원

16)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만을 추계하였으며, 정성호의원안은 자료의 한계로 추정곤란

## □ 최근 개정 연혁

- 2009년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현금 보상분 20%, 채권 보상분 25%, 채권 만기보유 30%
- 2013년 채권 만기보유에 대한 감면율 인상(3년 40%, 5년 50%)
- 2014년 보상별 감면율을 10%p 축소
  - 현금 보상분 10%, 채권 보상분 15%, 채권만기보유 3년 30%, 5년 40%

## □ 중점 논의 사항

-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세감면 우대는 과세 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과, 강제수용 후 보상금액 수령 시점까지의 행위제한 등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

## 나. 법인세

### (1) 법인세율 조정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송언석의원안: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1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로, 1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20%로 조정
  - 추경호의원안: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2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20%로 각각 인하
  - 이외 김성식·박주현·이언주·정갑윤·강효상의원안 등이 있는데, 2018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후 계류된 안건임
- 개정취지: 법인 세부담 완화

## 법인세율 변경 개정안

(단위: %)

| 과세표준         | 현 행 | 추경호의원안 | 송언석의원안 |
|--------------|-----|--------|--------|
| ~ 2억원        | 10  | 8      | 9      |
| 2 ~10억원      | 20  | 20     |        |
| 10~200억원     | 20  |        |        |
| 200 ~3,000억원 | 22  |        |        |
| 3,000억원 ~    | 25  |        |        |
|              |     |        | 20     |

주: 2018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후 계류된 김성식·박주현·이언주·정갑윤·강효상의  
원안은 본 표에 표기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08년) 13%/25%, (2009년) 11%/22%, (2010년) 10%/22%,  
(2012년) 10%/20%/22%, (2018년) 10%/20%/22%/25%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송언석의원안: 2020~2024년 △54.4조원
- 추경호의원안: 2020~2024년 △36.9조원

### □ 중점 논의 사항

- 법인세율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 심사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법인세율 변경은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법인세율이 일자리와 투자 등  
법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 관련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

## (2) 최저한세율 조정안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 추경호의원안: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7%에서 5%로,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10%를 8%로 2%p 인하

- 이외 정성호·이언주·노회찬의원안 등이 있는데, 2018년 정기국회 조세 소위에서 논의된 후 계류된 안건임
- 개정취지: 법인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적 활동 촉진·장려

#### 최저한세율 변경 개정안

(단위: %)

|                | 현 행 | 추경호의원안 |
|----------------|-----|--------|
| 중소기업           | 7   | 5      |
| 일반기업(100억원 이하) | 10  | 8      |
| 일반기업(1천억원 이하)  | 12  | 현행     |
| 일반기업(1천억원 초과)  | 17  | 현행     |

주: 2017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후 계류된 정성호·이언주·노회찬의원안은 본 표에 표기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최저한세율 개정연혁

| 소득귀속연도      | 중소기업 | 일반기업<br>(100억원 이하) | 일반기업<br>(1천억원 이하) | 일반기업<br>(1천억원 초과) |
|-------------|------|--------------------|-------------------|-------------------|
| 2012        | 7    | 10                 | 11                | 14                |
| 2013        | 7    | 10                 | 12                | 16                |
| 2014 ~ (현행) | 7    | 10                 | 12                | 1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경호의원안: 2020~2024년 △3,086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최저한세율 개정은 법인세법상 법인세율 정비안(인상, 인하)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3) 특허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특허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특허비용의 일정비율 (25%~30%)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
  - － 박정의원안: 중소기업 해외 특허비용 25% 세액공제
  - － 정병국의원안: 중소기업 특허권등 출원·등록비용 30% 세액공제
  - － 유승희의원안: 중소기업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25% 세액공제
- 개정취지: 중소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부담 완화,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박정의원안: 연평균 △429억원 (2021~2025년) △2,149억원
- 정병국의원안: 연평균 △756억원 (2019~2021년) △2,269억원
- 유승희의원안: 연평균 △304억원 (2020~2024년) △1,521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중소기업 특허비용 지원을 담은 의원안이 대중을 이루는 가운데, 특허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 추가하는 김광림의원안도 병합 심사
- 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특허비용 세액공제 효과성이 낮고, 특허비용은 행정비용으로 연구개발비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입장 제기
- 조세소위 논의 결과 해외 특허비용 세제지원 사례를 조사하여 내년 상반기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부대의견 채택에 합의하고 계류

## 다. 소비세제

###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
-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의 신고·납부 편의 확대 및 세부담 경감 대상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개정안

| 주요내용                 | 현행      | 유승희의원안  | 정인화의의원안 | 김철민의의원안               | 윤영석의원안     |
|----------------------|---------|---------|---------|-----------------------|------------|
| 간이<br>과세<br>기준<br>금액 | 4,800만원 | 6,000만원 | 8,000만원 | 9,000만원               | 9,500만원    |
|                      |         | 채이배의원안  | 박완수의의원안 | 박준영·전재수<br>·이훈·김진태의원안 | 박찬대의의원안    |
|                      |         | 9,600만원 | 9,800만원 | 1억원                   | 1억 2,000만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1996년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가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로 분리 운영  
- 4,800만원 이하 과세특례(세율 2%) / 4,800만원~1.5억원 간이과세
- 2000년 7월 과세특례가 폐지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인하
- 2019년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3,000만원 인상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6천만원: (2020년) △1,457억원 (연평균) △1,994억원 (2020~2024년) △9,969억원
- 1억 2천만원 (2020년) △8,432억원 (연평균) △11,570억원 (2020~2024년) △57,851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수혜대상 규모가 자연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영세 자영업자 지원의 측면에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
- 다만, 간이과세 확대 시 세금계산서가 수반되는 거래관행이 줄어들어 과세 표준 양성화가 저해되고 간이과세자를 중심으로 과세기반이 축소될 우려 지적

## (2) 제조업 중 소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
- 개정취지: 영세한 제조업에 대한 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조업 중 소기업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이춘석의원안 | 김광림의원안 |
|--------|-------|--------|--------|
| 공제율 인상 | 4/104 | 6/106  | 8/10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13년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을 2/102 → 4/104로 인상
- 2019년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공제율을 4/104 → 6/106으로 인상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 중 농산물을 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식료품 등의 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의 취지
- 다만, 공제대상이 국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도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공제율 인상이 농어민이 아닌 제조업을 경영하는 수입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 인상 여부와 적정 수준을 보다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3)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 개정취지: 조세형평성 실현 및 주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이언주 · 이현재의원안         | 권성동의원안           |
|-------------|------------------------------------|----------------------|------------------|
| 조건부면세 대상 추가 | 의료용, 의약품 · 비료 ·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석유류 추가 | 석유제품 정제공정용 중유 추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0년) △128억원 (연평균) △128억원 (2020~2024년) △640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기술개발로 인한 과세체계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필요
-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면세혜택 필요
  - － 의료용, 의약품·비료·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에는 면세혜택
-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최종소비가 아닌 반출시점에서 과세
  - － 중유가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 연료용·원료용을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남

### (4)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인하
- 개정취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

###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정유섭의원안 | 유승희의원안 |
|-------------|-------|--------|--------|
| 세율 폐지 또는 인하 | 90원/ℓ | 폐지     | 10원/ℓ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2008년 1월부터 기본세율 181원/ℓ → 90원/ℓ 으로 인하
- 2014년 7월부터 탄력세율 63원/ℓ 적용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폐지: (2020년) △1,643억원 (연평균) △1,495억원 (2020~2024년) △7,475억원
- 인하: (2020년) △261억원 (연평균) △237억원 (2020~2024년) △1,186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프로판도 저소득층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
  - － 프로판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세나 인하 요구 우려
- 등유 세율이 폐지되거나 대폭 인하되더라도 감소분이 최종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우려
- 세수감소가 상당히 큰 측면이 있어 계류하되, 부대의견을 채택
  - －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 재정지원 확대 방안 마련

## 라. 재산세제

###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입법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3억원 상향과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 개정취지: (기본공제 확대) 주택 보유자의 주거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입법) 조세법률주의 준수, 재산권 보장의 안정성 확보

###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이종구의원안                        |
|---------------|------------------------------|-------------------------------|
| 주택분 기본공제 확대   | 기본공제: 6억원<br>1세대 1주택 공제: 9억원 | 기본공제: 9억원<br>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입법 | 60~100%(시행령 85%)             | 80% <sup>1)</sup>             |

주: 1) 의원발의(2018.2.12.) 당시 시행령 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주택분 기본공제) 2008.12. 세법개정에 따라,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6억원이 적용되다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9억원으로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입법) 2005.12.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보유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적용 비율 도입(법률)
  - － '06년 70%→'07년 80%→'08년 90%→'09년 100%
- 2008.12. 공정시장가액비율(법률 60~100%, 시행령 80%) 도입
  - － 2018.12.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시행령)
    - '18년 80%→'19년 85%→'20년 90%→'21년 95%→'22년 100%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9년) △1,716억원 (연평균) △1,918억원 (2019~2023년) △9,591억원

#### □ 중점 논의 사항

-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조정은 최근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수가 급증한데 대한 주택주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고가주택 보유부담을 과다하게 경감
  - －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 '16년 8.1만호→'19년 21.8만호(서울 20.6만호)
  - －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보면, 개정안은 실거래가 기준 1주택자 17억원, 공동소유 1주택 26억원까지 비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감되므로 광의의 세율로 볼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 존재

## (2)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인상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지원
- 개정취지: 명문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인상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추경호의원안            | 박명재의원안             | 이진복의원안             |
|-------------------|-------------------|-------------------|--------------------|--------------------|
| 가업상속공제<br>공제한도 인상 | 일반기업<br>200~500억원 | 명문장수기업<br>1,000억원 | 명문장수기업<br>일반기업의 4배 | 명문장수기업<br>일반기업의 2배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세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 명문장수기업과 일반기업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공제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제시

## 마. 기타세제

###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인상 및 면세한도 상향입법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 개정취지: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관세 행정 효율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개정안

| 주요 내용     | 현행       | 추경호의원안   |
|-----------|----------|----------|
| 기본면세한도 인상 | 미화 600달러 | 미화 800달러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최근 개정 연혁

-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
- 1988년 30만원 혹은 미화 400달러로 확대
- 1996년 미화 400달러(원화기준 삭제)로 전환
- 2014년 미화 600달러로 인상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 중점 논의 사항

-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고, 해외구매한도도 늘어나 해외소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 면세품 구매는 소득 수준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견해
- 부유층 보다는 젊은 층이 면세품 구매에 적극적이라는 견해

## (2)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퇴직한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개업을 한 경우 사건 수임제한
- 개정취지: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개정안

| 구분  |    | 현행   | 유성엽·엄용수의원안                                    |
|-----|----|------|-----------------------------------------------|
| 대상자 |    |      |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
| 제한  | 지역 | (신설)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                             |
|     | 업무 |      |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대리 |
|     | 기간 |      | 퇴직한 날부터 1년                                    |
| 예외  |    |      | 국선세무대리 등 공익목적 수임                              |
| 벌칙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br>(엄용수의원안은 벌칙 제외)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세수효과 없음

### □ 중점 논의 사항

- 대상자를 퇴직한 5급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하고, 업무제한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하다는 의견

## (3)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 가능. 다만, 장부 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 개정취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보호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범위 등 관련 개정안

| 구분      | 현행                                                                                               | 김정우의원안                                                                                                                                                           | 이철희의원안 · 정부안                                                                                                                                                                                           |
|---------|--------------------------------------------------------------------------------------------------|------------------------------------------------------------------------------------------------------------------------------------------------------------------|--------------------------------------------------------------------------------------------------------------------------------------------------------------------------------------------------------|
| 업무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li> <li>○ 행정처분의 청구</li> <li>○ 일반 법률사무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신청·청구 등 대리</li> <li>○ 세무조정</li> <li>○ 조세상담 또는 자문</li> <li>○ 의견진술 대리</li> <li>○ 이의신청 대리</li> <li>○ 신고서류 확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신청·청구 등 대리</li> <li>○ 세무조정</li> <li>○ 조세상담 또는 자문</li> <li>○ 의견진술 대리</li> <li>○ 이의신청 대리</li> <li>○ 신고서류 확인</li> <li>○ 장부작성 대행</li> <li>○ 성실신고 확인</li> </ul> |
| 실무교육 기간 | (신설)                                                                                             | 시행령 규정                                                                                                                                                           | —<br>(정부안은 시행령 규정)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세수효과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에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 실무교육의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실무교육 기간을 법률에 규정

## 바. 지방세제

### (1) 주택 관련 거래 및 보유세율 완화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완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개정취지: (취득세율 완화)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  
(재산세 부담 완화)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가중에 대해서 1주택  
실거주 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 도모

주택 취득세율 완화 관련 개정안

| 구분        | 현행                                      | 윤영석의원안                                                       | 윤상현의원안                                                           |
|-----------|-----------------------------------------|--------------------------------------------------------------|------------------------------------------------------------------|
| 과표구간 및 세율 | 6억원 이하: 1%<br>6억원~9억원: 2%<br>9억원 초과: 3% | 6억원 이하: 0.5%<br>6억원~10억원: 1%<br>10억원~15억원: 2%<br>15억원 초과: 3% | 5억원 이하: 0.5%<br>5억원~10억원: 1.5%<br>10억원~15억원: 2.5%<br>15억원 초과: 3% |

주: 윤영석의원안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 감소분 보충  
(지방소비세율 15%→17%, 취득세 보전분 6%→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 관련 개정안

| 구분       | 현행 | 김현아의원안 <sup>1)</sup>                   | 윤상현의원안                    | 전혜숙의원안 <sup>2)</sup>                                                           |
|----------|----|----------------------------------------|---------------------------|--------------------------------------------------------------------------------|
| 장기보유 공제율 | 신설 | 5~7년: 10%<br>7~10년: 20%<br>10년 이상: 30% | 5~10년: 25%<br>10년 이상: 50% | —                                                                              |
| 세부담 상한특례 | 신설 | —                                      | —                         | 65세 이상 1주택<br>자의 10년 이상<br>주택소유시 재산<br>세액 상승률 상한<br>3억원~6억원: 7%<br>6억원 초과: 20% |

주: 1)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도 공제된 금액 적용

2) 2022년까지 한시 적용(부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취득세율 완화

- 윤영석의원안: (2019년) △9,114억원 (연평균) △27,496억원  
(2019~2024년) △164,974억원<sup>17)</sup>
- 윤상현의원안: (2020년) △20,775억원 (연평균) △25,129억원  
(2020~2024년) △125,647억원

○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

- 김현아의원안: (2019년) △9,152억원 (연평균) △10,169억원  
(2019~2023년) △50,847억원
- 윤상현의원안: (2020년) △10,823억원 (연평균) △12,699억원  
(2019~2023년) △63,495억원
- 전해숙의원안: (2019년) △59억원 (연평균) △73억원 (2019~2022년) △179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취득세율 완화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
  - 정부는 주택거래는 서울보다 경기에 반응하는 편이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 조정효과만 있을 뿐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의견 제시
  - 취득세율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
- 1세대 1주택 실거주 수요에 대해 재산세가 완화 효과를 예상하나,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재산세는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물세로 보유기간 등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인적 요건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혜택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 필요

---

17)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및 발전관련 세율 인상

###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외부불경제 대상 추가 및 화력발전 등 세율 인상
- 개정취지: 외부효과의 내부화 및 발전시설주변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개정안

| 구분   | 이철규의원안 | 변재일의원안 | 강석호 · 소병훈 · 유성엽 · 이개호 · 유민봉의원안 | 김영춘 · 박주민의원안      |
|------|--------|--------|--------------------------------|-------------------|
| 과세대상 | 시멘트 생산 | 폐기물 소각 | 방사성폐기물                         | 발전용 원자로<br>삽입 핵연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발전관련 세율 인상 개정안

| 구분           | 화력발전                    | 발전용수                | 원자력발전 <sup>1)</sup> | 원자력발전<br>발전설비용량 <sup>2)</sup>    |
|--------------|-------------------------|---------------------|---------------------|----------------------------------|
| 현행           | 0.3원/kWh                | 2원/10m <sup>3</sup> | 1원/kWh              | —                                |
| 정유섭의원안       | 1원/kWh                  | —                   | —                   | —                                |
| 여기구의원안       | 0.3원/kWh<br>(석탄 2원/kWh) | —                   | —                   | —                                |
| 이종배의원안       | —                       | 3원/10m <sup>3</sup> | —                   | —                                |
| 김병관의원안       | —                       | —                   | 1.2원/kWh            | —                                |
| 조배숙의원안       | —                       | —                   | 1.5원/kWh            | —                                |
| 정갑윤 · 양승조의원안 | —                       | —                   | 2원/kWh              | —                                |
| 유성엽의원안       | —                       | —                   | 2.2원/kWh            | —                                |
| 주호영의원안       | —                       | —                   | —                   | 발전: 7,000원/kW<br>영구정지: 3,500원/kW |
| 박주민의원안       | —                       | —                   | —                   | 발전: 5,000원/kW<br>영구정지: 2,500원/kW |

주: 1) 양승조의원안을 제외하고는, 납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안 포함

2) 납세의무자, 납세지에 영구정지 발전소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 변재일의원안: (2020년) 189억원, (연평균) 189억원, (2020~2024년) 943억원
  - － 이철규의원안 등: 추정곤란
- 발전관련 세율 인상
  - － 이종배의원안: (2020년) 25억원, (연평균) 25억원, (2020~2024년) 125억원
  - － 정갑윤의원안: (2020년) 1,335억원, (연평균) 6,675억원, (2020~2024년) 1,335억원
  - － 정유섭의원안 등: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과세대상 확대에 포함되는 시멘트 생산 등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증가 등 파급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도입('18년)으로 인한 이중부담 우려
-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등 재원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발전관련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으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우려
  - －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세율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우려
  - － 현행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설비용량 기준 과세는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과세하여 현행 세제에 맞지 않음

(3)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전기·연료전지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현행 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서 감면대상 확대

- 개정취지: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소 등 신기술 자동차산업 육성

#### □ 최근 개정 연혁

- (전기·수소차) 2016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감면액 확대
  - － 2017~2018년말까지 공제한도 140→200만원
  - － 2018년말 이후 공제한도 140만원

#### □ 중점 논의 사항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수소자동차 산업 육성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수송용 화석연료의 소비 감소를 통한 대기질 개선 기대
  - －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기·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기대
-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전기·연료전지버스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관련산업 육성 및 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 전기·연료전지버스로 차량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서민층의 교통편의 제고 기대



부부



## 부 록

### 1. 기타 세법개정 항목

| 주요 내용                                            | 조 문                     |
|--------------------------------------------------|-------------------------|
| <b>국세기본법</b>                                     |                         |
|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               | 국기법 제81조의13제1항          |
|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정성 확보                             | 국기법 제81조의13제6항          |
| 무신고가산세 금액 산정 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 국기법 제47조의2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구체적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                      | 국기법 제27조                |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 국기법 제13조제8항             |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 국기법 부칙 제1조 단서           |
|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 국기법 제64조                |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강화                          | 국기법 제66조의2              |
|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확대                                  | 국기법 제76조                |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 국기법 제78조제2항             |
| 납세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 국기법 제10조                |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 국기법 제45조의2<br>제1항 및 제4항 |
|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지 않는 처분 추가                      | 국기법 제55조제1항             |
|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 국기법 제81조의12             |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 국기법 제81조의18             |
|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기법 제85조의6              |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국기법 제26조의2              |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국기법 제45조의3제3항           |
|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 국기법 제45조의2제4항           |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국기법 제48조의2항             |
| 명의위장 시 국세환급금 환급권자 신설                             | 국기법 제51조                |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인 추가                       | 국기법 제59조의2제1항           |
| 이의신청 시 납세자의 재결정 선택권 확대                           | 국기법 제66조의제1항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허용                       | 국기법 제81조의15제6항          |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정비                                 | 국기법 제21조제2항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국세기본법</b>                                        |                                                         |
| 납세의무 자동확정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 국기법 제22조제4항                                             |
| 납부지연가산세 등 관련 법정기일 보완                                | 국기법 제35조제2항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 국기법 제47조의5                                              |
|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비                             | 국기법 제3조·제5조·제5조의2·제7조제2항·제26조의2·제35조·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 |
|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허용 관련 수정신고의 효력조문 정비             | 국기법 제22조의2                                              |
| 가등기(가등락)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관계 명확화                        | 국기법 제35조                                                |
| 압류우선주의가 적용되는 청구에 참가압류 추가                            | 국기법 제36조                                                |
| 2018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역외거래 개념 관련 조문 정비                   | 국기법 제47조의2제1항·제47조의3제1항·제81조의8제3항                       |
|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기준 정비                                    | 국기법 제47조의4제1항                                           |
| 국세환급금의 선충당권 상향입법                                    | 국기법 제53조                                                |
| <b>소득세</b>                                          |                                                         |
| 결손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 보조금 등 제외 대상 축소      | 소법 제26조제2항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br>(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           | 소법 제59조의2제1항                                            |
| 가산세 규정 세분화: 조문별 가산세의 명칭 부여                          | 소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금액 명확화                           | 소법 제81조제6제1항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상(2%→5%)                        | 소법 제81조의7제1항 제1호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확대                              | 소법 제81조의10제1항, 제2항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 적용기준일 연장<br>(다음달 11일→다음달 25일) | 소법 제81조의10제1항 제5호·제6호                                   |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소법 제94조제1항제4호<br>마무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소득세</b>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확대(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산정 시 손자법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등 보유비율 고려)        | 소법 제94조제1항제4호<br>다목                         |
|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 소법 제95조제3항                                  |
| 기준시가 공사·공고 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등 기준시가의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 및 오피스텔 및 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범위 명확화 등 | 소법 제99조제1항제1호<br>다목                         |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소법 제104조제4항제3호                              |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소법 제108조                                    |
|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시 가산세 부과                                         | 소법 제114조의2제1항                               |
|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 소법 제119조제10호                                |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 명확화                                                          | 소법 제120조                                    |
|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배제 신설                                         | 소법 제121조제2항                                 |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 범위 확대                                                    | 소법 제156조의2제4항,<br>제156조의4제2항,<br>제156조의6제4항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축소                                                            | 소법 제162조의3제1항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소법 제164조제1항,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추가                                                      | 소법 제164조의3제1항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정비                                              | 조특법 제16조제1항                                 |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 조특법 제16조의5제1항                               |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 조특법 제66조제4항,<br>제67조제4항, 제68조<br>제2항        |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및 일몰연장                                          | 조특법 제83조제1항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조특법 제85조의8                                  |
| <b>법인세</b>                                                                  |                                             |
|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 등 제외                                           | 법법 제18조제6호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 법법 제24조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법법 제27조의2제1항                                |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 에서 “이상”으로 변경                                | 법법 제18조의2, 제18<br>조의3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법인세</b>                                                           |                                                               |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상향                                                   | 법법 제25조                                                       |
|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                                         | 법법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
| 가산세 제도의 조정<br>-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br>-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 | 법법 제75조의4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br>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 법법 제93조제8호.제 93조제10호차목 신설, 안 제98조제1항제8호                       |
|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 법법 제98조의4제4항 단서, 제98조의5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6제4항 단서 신설, 제98조의6제4항 본문 |
|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조특법 제5조제4항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                                  | 조특법 제6조제3항                                                    |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조특법 제8조의3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조특법 제13조제2항                                                   |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13조의2제1항                                                 |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 조특법 제13조의3 신설                                                 |
|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조특법 제14조제1항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 조특법 제16조제1항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16조의2제1항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 조특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 신설                                   | 조특법 제18조                                                      |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 조특법 제18조의3 신설                                                 |
|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신설                                       | 조특법 제46조의7제1항                                                 |
|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 조특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 조특법 제25조의6제1항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법인세</b>                                          |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25조의4                   |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   | 조특법 제29조의3제1항<br>및 제30조제1항   |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 조특법 제29조의6제1항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 명확화                      |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30조의2제1항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30조의4제3항                |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 방식 변경                   | 조특법 제38조의2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74조제1항 및<br>제4항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                | 조특법 제85조의2제3항<br>및 제6항 삭제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85조의6                   |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조특법 제85조의7제1항<br>및 제85조의8제1항 |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제97조의8제1항                |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                          | 조특법 제99조의9제2항                |
|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제외                        | 조특법 제100조의32제<br>1항제1호       |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조특법 제104조의10제1항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적용대상을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한정 | 조특법 제104조의25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용 세액공제 신설              | 조특법 제104조의30                 |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 조특법 제132조제1항<br>및 제2항        |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조특법 제140조제1항<br>및 제2항        |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조특법 제144조제1항<br>제2호 신설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소비세제</b>                                                                                                                                           |                      |
|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재화의 공급 규정 보완                                                                                                  | 부가세법 제10조            |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 부가세법 제39조제1항         |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기한 보완                                                                                                                         | 부가세법 제42조            |
| 대손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기한 보완                                                                                                                               | 부가세법 제45조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조문 정비                                                                                                                         | 부가세법 제46조제1항         |
|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폐지                                                                                                                                         | 주세법 제19조 · 54조 · 55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에 대한 추정주체 및 추정절차 정비</li> <li>-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농어민 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 관련 정보' 추가 등</li> </ul> | 조특법 제106조의2          |
| <b>재산세제</b>                                                                                                                                           |                      |
| 배우자 상속공제의 신고기한 연장사유 신고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 명확화                                                                                                             | 상증세법 제19조제3항         |
|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                                                                                                                                | 상증세법 제21조제1항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화                                                                                                                                       | 상증세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    |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 상증세법 제30조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합산 과세                                                                                                                                   | 상증세법 제43조제2항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 명확화                                                                                                                                     | 상증세법 제45조의2제4항       |
| 특수관계법인 관련 증여의제규정의 자구수정                                                                                                                                |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
| 물납요건 합리화                                                                                                                                              | 상증세법 제73조제1항제3호      |
|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확대                                                                                                                                         | 상증세법 제82조제2항         |
|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이 되는 농지 등 자산에 염전                                                                                                                        | 조특법 제71조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기타세제</b>                                       |                                         |
| 체납액 징수 순위 명확화                                     | 국징법 제4조                                 |
|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국징법 제7조                                 |
|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 규정 등 보완                        | 국징법 제9조제1항                              |
|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감정평가업자 추가                         | 국징법 제66조                                |
| 세법 상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                    | 국징법 제5조                                 |
|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                        | 국징법 제7조의5                               |
| 우회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환                            | 국조법 제2조의2                               |
|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                                 | 국조법 제3조의2                               |
| 국제거래에 관한 중복 자료제출 정비                               | 국조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 국제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신설                    | 국조법 제11조제7항                             |
|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 국조법 제12조                                |
| 법원판결에 의한 상호합의 무효 조항 삭제                            | 국조법 제27조                                |
| 실제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신설                            | 국조법 제31조                                |
|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부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국조법 제31조의4                              |
| 정보미제공 금융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근거규정 신설                 | 국조법 제31조제11항                            |
| 세무공무원의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신설                   | 국조법 제31조의2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 | 국조법 제35조                                |
| 세법상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한 취급되도록 규정                      | 국조법 제34조                                |
|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른 상향입법 등                           | 국조법 제17조제2항·제18항제1항 및 제2항·제4조의2·제34조제5항 |
| 가산세 감면규정 상향입법 및 간접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 관세법 제38조의2, 제42조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한 가산금 준용 규정 삭제에 따른 정비  | 관세법 제38조의2, 제48조                        |
|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관세법 제41조, 제42조                          |
| 품목분류 변경사유의 시행령 위임근거 신설                            | 관세법 제87조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기타세제</b>                               |                          |
| 간이세율 적용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             | 관세법 제96조                 |
| 재수입물품 면세대상에 국제경기대회 추가 등                   | 관세법 제99조                 |
| 사후관리 위탁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신설                  | 관세법 제108조                |
| 관세 채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 명확화                    | 관세법 제116조의5              |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심판청구 조항 준용범위 확대            | 관세법 제118조                |
| 납세자의 협력 의무 신설                             | 관세법 제118조의3              |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신설      | 관세법 제118조의5              |
| 심사청구서의 보정방법 명확화                           | 관세법 제123조                |
| 불복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명확화                   | 관세법 제125조                |
|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 신설           | 관세법 제128조의2, 제132조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근거 신설                     | 관세법 제129조의2              |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신설                        | 관세법 제136조                |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시행령 위임근거 신설                | 관세법 제178조                |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한 상향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관세법 제196조의2, 제277조제4항제2호 |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          |
|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사유 추가                    | 관세법 제240조의6              |
| 적법한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 관세법 제242조의2              |
| 관세청장 등의 통신판매중개자 자료요구권 신설 및 실태조사 공표 등      | 관세법 제266조                |
| 관세청장의 과태료 부과권한 신설 및 과태료 기준의 시행령 위임        | 관세법 제277조의2              |
| 밀수출입 예비법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물품 대상 확대 | 관세법 제282조                |
| 관세법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관세법 제284조의2              |
| 관세청장·세관장의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                   | 관세법 제311조                |
| 조미김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 관세율표 2106.90호, 2008.99호  |
|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FTA특례법 제36조              |
|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 FTA특례법 제14조              |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정                           | FTA특례법 제5조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기타세제</b>                                     |                                     |
|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 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        | FTA특례법 제9조                          |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관련 규정 정비                           | FTA특례법 제8조                          |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규정 명확화                             | FTA특례법 제44조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 조특법 제99조의10                         |
|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의 상향입법                         | 조특법 제104조의8                         |
| <b>지방세제</b>                                     |                                     |
| 지방소비세 세목의 특례 마련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신설                    |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
|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신고 청구 허용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제1항           |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조정 및 세분화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합리화                                  |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보완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3항, 제84조의2, 제84조의3 신설  |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제3호 신설               |
|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제1호                  |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신설                    |
|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합리화                              | 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5호 단서 신설               |
| 취득세 과세표준 합리화 및 부족세액 징수 규정 보완                    | 지방세법 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 지방세법 제60조                           |

| 주요 내용                                     | 조 문                                                                      |
|-------------------------------------------|--------------------------------------------------------------------------|
| <b>지방세제</b>                               |                                                                          |
| 지방소비세 안분 비율 구체화                           | 지방세법 제71조 및 부칙 제2조                                                       |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 지방세법 제89조제1항 제1호                                                         |
|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                       |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제5항, 제103조의5 제4항·제5항 및 제103조의7 제9항·제10항 신설                  |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5항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
|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2항                                                         |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도입                       | 지방세법 제106조의2 신설                                                          |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 지방세법 제118조                                                               |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 특례 마련            | 지방세법 제119조의3 신설                                                          |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개편                             |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 2. 세입부수법안 지정 목록

| 연번 | 제출                | 법안명                           | 주요내용                                                                      |
|----|-------------------|-------------------------------|---------------------------------------------------------------------------|
| 1  | 정부<br>15건         | 국세기본법                         | · 가산세 종류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구분 등                                                  |
| 2  |                   | 국세징수법                         | · 체납액 징수순위 명확화 등                                                          |
| 3  |                   | 소득세법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br>·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
| 4  |                   | 법인세법                          | · 손금 및 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br>·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
| 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br>·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
| 6  |                   | 부가가치세법                        | ·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상향 조정(15% → 21%)<br>·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 7  |                   | 주세법                           | ·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 개편                                                         |
| 8  |                   | 증권거래세법                        | · 비상장주식 거래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
| 9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등을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 10 |                   | 조세특례제한법                       | ·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br>·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인상                       |
| 11 |                   | 교육세법                          | ·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                                                      |
| 12 |                   | 농어촌특별세법                       | ·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 13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역외탈세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 14 |                   | 관세법                           | ·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br>·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환불 시 관세 환급 허용   |
| 15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정<br>·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
| 16 | 더불어<br>민주당<br>12건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박완주의원안)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체계 확립 및 기금설치                                        |
| 17 |                   | 국가재정법 (박완주의원안)                | · 기금을 설치 근거 법률항목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

| 연번 | 제출                | 법안명                                         | 주요내용                                                                                        |
|----|-------------------|---------------------------------------------|---------------------------------------------------------------------------------------------|
| 18 | 더불어<br>민주당<br>12건 | 지방세법<br>(홍익표의원안)                            | ·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액의 15% → 21%)<br>·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에 대한 한시적 보전에 대한 근거 마련 |
| 19 |                   | 지방자치단체 기금<br>관리기본법<br>(홍익표의원안)              | ·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금액을 상생기금 재원으로 추가                                                     |
| 20 |                   | 지방재정법<br>(홍익표의원안)                           | · 시·군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가 되는 지방소비세 액에서 전환사업 보전금액 제외                                                |
| 21 |                   | 지방세기본법<br>(홍익표의원안)                          | · 시·군·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입처리 근거 규정 신설                                                          |
| 22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br>등에 관한 특별법<br>(홍익표의원안)         | · 세종시 교육청 전출금 산정 기초가 되는 지방소비 세액에서 전환사업 보전금액 제외                                              |
| 23 |                   | 지방교육재정<br>교부금법<br>(박찬대의원안)                  | ·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 규모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보전을 위한 교부 비율 인상                              |
| 24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br>(윤관석의원안)                       |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 비 율 하향 조정                                                         |
| 25 |                   | 환경정책기본법<br>(한정애의원안)                         |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배분 비 율 상향 조정                                                         |
| 26 |                   | 소재·부품전문기업<br>등의 육성에 관한<br>특별조치법<br>(이인영의원안) | · 법령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장비’를 추가<br>·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및 특별회계 설치    |
| 27 |                   | 국가재정법<br>(이인영의원안)                           | ·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추가                                  |
| 28 | 자유<br>한국당<br>3건   | 법인세법<br>(추경호의원안)                            | ·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
| 29 |                   | 조세특례제한법<br>(추경호의원안)                         | · 최저한세율 인하                                                                                  |
| 30 |                   | 조세특례제한법<br>(김광림의원안)                         | ·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
| 31 | 바른<br>미래당<br>2건   | 소득세법<br>(채이배의원안)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및 필요경비율 조정                                                        |
| 32 |                   | 조세특례제한법<br>(채이배의원안)                         |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 사업자 추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     |                                                            |
|-----|------------------------------------------------------------|
|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
| 발행인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 편 집 |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
| 발행처 | <b>국회예산정책처</b><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br>(tel 02·2070·3114) |
| 인쇄처 |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소비세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4834)
- 

ISBN 978-89-6073-251-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